

월간

# 재정포럼

2021. July\_Vol.301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7

## 권두칼럼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 하연섭

## 현안분석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강동익  
비만세 해외 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 최성은

## 정책연구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 외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미국 기업 대상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국가에 대한 관세보복 유예 외



##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 CONTENTS

### 권두칼럼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 하연섭 02

### 현안분석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강동익 08

비만세 해외 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 최성은 28

### 정책연구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 50

| 박노옥·윤성주·김현아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55

| 장우현·방세훈

재정지출의 성질, 지속성, 발표 시기에 따른 경기부양효과 59

| 강동익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62

| 김현아·조임곤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65

| 김문정·오종현·조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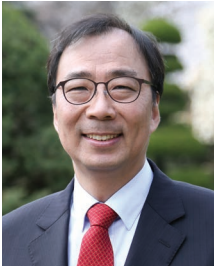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미국 기업 대상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국가에 대한 관세보복 유예 70



##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도전은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대학의 재정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 대학 생태계를 근거에서부터 위협할 태세이다.

### 대학재정 위기에 따른 대학의 미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대학 입학자원은 2025년까지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며, 2025년 이후 다소 상승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대학 입학정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즉, 2024년에는 대학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원 12만 4천명이, 그리고 2030년에는 9만 7천명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대학에 엄청난 충격을 줄 전망이다. 이러한 충격은 단지 지방대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요원을 배출하는 서울 주요 대학의 대학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연쇄효과를 일으켜 한국 대학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13년 동안의 대학등록금 동결로 한국 대학들은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 대학의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대학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 교육과 연구의 사회적 적실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과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대학의 현실과 기대 사이의 불균형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예산의 재조정 필요

대학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재정 전체가 힘든 상황은 아니다. 그간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예산의 증액을 요구할 때 사용하던 논리는 OECD 평균 대비 1인당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으나, 현재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생 1인당 예산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OECD 평균은 9,090달러이나 우리나라는 1만 1,702달러에 달하고 있고, 중등교육 단계에서 OECD 평균은 1만 547달러인 반면, 우리나라는 1만 3,579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역전되어 OECD 평균은 1만 6,327달러인 반면, 우리나라는 1만 633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향후 교육예산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고등교육 단계로 이전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현재 초중등교육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골격은,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교육시설 등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1970~1990년대에 형성되었으나,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고급인력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까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지방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의 복잡한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만, 교육재정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것이다.

둘째,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재정의 총액은 늘어났지만, 개별 대학 입장

.....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향후 교육예산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고등교육 단계로  
 이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 확대,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  
정부지원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기부금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에서는 총수입이 정체 내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학부모의 지출을 대체할 뿐, 대학 입장에서는 수입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법규는 지난 3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법을 무시한 채 정부가 규제와 행정지도를 통해 등록금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은 교육단계 중 가장 낮은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단계로서, 교육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특히, 정부개입에 의해 등록금이 낮게 유지되어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낮은 등록금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계층 간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원래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제공하다가 등록금을 도입한 대표적인 OECD 회원국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인데 등록금을 도입한 정당이 모두 좌파 정당이었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부지원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재정지원의 대표적인 예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들 수 있으나, 당초의 설계 의도와는 달리 예산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규모가 큰 편이지만 대학에서 체감하는 재정 확충효과는 크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수목적지원 사업에는 교육부 BK21(Brain Korea 21),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등과 다른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이 해당한다. 산학협력사업은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고, 많은 경우 대학의 매칭을 요구하고 있어 산학협력을 많이 할수록 대학재정은 어려워진다는 불만이 제기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 사업 모두 예산의 용처에 대해 폭넓은 자율성을 허용해야 실질적인 대학재정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사실, 세계적으로 기부금이 대학재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도 대학에 대한 기부금 비중이 매우 낮으나 이를 확대할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액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에 대해 15%만을 세액공제하고 있어, 이를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요체

지식과 인재가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의 질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재 재정상태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대학의 재정 문제에 접근할 때가 아니다. **KIPF**

.....

**지식과 인재가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의 질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재 재정상태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강동익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비만세 해외 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dikang@kipf.re.kr)

## I. 서론

정부는 작년 금융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동안 상품 등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졌던 여러 과세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전면과세를 시행하였고, 금융상품 간의 폭넓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였다. 물론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금융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대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과세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양도소득)은 단일세율에 가까운 세율(20%, 25%)로 분류과세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소득과 과세의 통합 논의를 어렵게 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단순하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과세 형평성

의 측면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과세 형평성의 측면 모두에서 궁극적으로는 통합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채 적용되기 이전인 현재<sup>1)</sup>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두 소득이 통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체계 안에서 과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통합 이후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면모를 유지할지, 또는 개정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같은 형태로 과세를 해야 할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과세체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발생할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과세제도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소득 및 자산 분포에 미칠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금융소득 과세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금융소득 과세제도 설계에 따른 종합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찾기 어렵다. 과세제도 구성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현재 존재하는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연구는 과세에 따른 미시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윤성만·이상엽(2017)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변화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인 바 있으며, 전병욱(2017)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총 금융자산이 감소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한 연구와 금융과세 현황 및 연구자의 생각을 정리한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합된 금융소득(이하 통합금융소득) 과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과세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과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일반균형 모형을 통하여 과세제도에 따른 효율성 및 형평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자산과 소득이 이질적인 가구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상이한 수익률을 경험할 때 과세제도가 각 가구들의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투자행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형평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통합된  
금융소득 과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과세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과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1)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는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러 이자·배당소득을 통합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명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는 상당히 복잡하다.

## II. 금융과세 현황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앞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현재,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이자소득이란, 국가 또는 기업의 채권이나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칭하며 배당소득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배당 등을 의미한다.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합하여 금융소득이라 지칭하며, 금융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으로 14%(지방세 1.4% 별도)의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러 이자·배당소득을 통합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명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는 상당히 복잡하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하는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에 대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비상장 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개인이 과세 대상이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세율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표 1> 참조). 파생상품은 주가지수 관련 상품만이 과세 대상이다. 기본공제와 손익통산은 주식과 파생상품이 각각 적용되고,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파생상품의 과세범위는 잦은 주기로 개정되어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표 2>, <표 3> 참조).

양도소득 과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을 추진하였다.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금융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범위를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였다. 나아가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주식(주식형 공모펀드 포함) 양도소득과 그 외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통합하여 손익통산과 5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과세표준은 20% 또는 3억원 초과분의 경우 25%의 세율로 과세되며, 개정된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표 1> 주주요건 등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주주 요건	구분	보유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	구분 없음		20%
		1년 미만		30%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이상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대주주 외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구분 없음		10%
	중소기업 외 비상장 주식			20%
해외주식	국내 중소기업 법인의 국외 상장 주식	구분 없음		10%
	그 외			20%

출처: 영화조세통람, 『조세편람 2019』, 2019.

<표 2>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변화

구분	2000년~	2005년 8월~	2013년 7월~	2016년 4월~	2018년 4월~	2020년 4월~	2021년 4월~
유가 증권	지분율 3% 또는 시총 100억원 이상	지분율 3% 또는 시총 100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시총 50억원 이상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	지분율 1% 또는 시총 15억원 이상	지분율 1% 또는 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1% 또는 시총 3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5% 또는 시총 50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시총 40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시총 20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시총 15억원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원	지분율 2% 또는 시총 3억원 이상
코넥스		-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원 이상	-	-	지분율 4% 또는 시총 3억원 이상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2. 소득세』, 2017, p. 124.

<표 3> 파생상품 과세의 변화

과세시기	과세 대상	세율	비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코스피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10%) <sup>1)</sup>	장내 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일부 포함
2016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장내 파생상품
2017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코스피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2019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배당지수 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 선물, 유로스톡스50 선물 등		기초자산 등이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 1) 20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1.asp?cinfo\\_key=MINF5720100720165645&menu\\_a=110&menu\\_b=100&menu\\_c=4000](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1.asp?cinfo_key=MINF5720100720165645&menu_a=110&menu_b=100&menu_c=4000), 검색일자: 2020. 5. 11.

정부는 양도소득  
과세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세법개정을 추진하였다.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금융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범위를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였다.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소득이기 때문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만,  
이 둘 간의 통합 문제는  
두 제도의 차이로 인해  
여러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

금융투자소득의 도입과 과세제도의 개정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는 이원화되어 있어 이 역시 궁극적인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소득이기 때문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둘 간의 통합 문제는 두 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어떤 식으로 통합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같은 단일세율에 가까운 세율구조로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같은 누진적인 과세제도가 바람직할지에 대하여 여러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

아쉽게도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모형 경제를 통하여 통합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통합금융소득 과세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III. 모형

#### 1. 기준 경제(통합금융소득 비과세)

본고에서 활용한 모형은 생산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일명 Endowment Economy 모형이다. 모형 경제에는 measure 1의 이질적인 가구들이 존재하며, 각 가구에는 매기 확률적으로 생산물  $y \in (y_l, y_h)$ 가 주어진다. 즉,  $y$ 는 근로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행 강도  $(\lambda_l, \lambda_h)$ 를 갖는 ‘이상태 푸아송 과정’(two-state Poisson process)을 따라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y_l$ 은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y_h$ 는 일부 고소득 가구가 받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근로소득은 본 연구 목적에 있어 부차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적절한 노동소득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도록 두 가지의 임금상태만 상정한다.

이 모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가구가 두 가지의 자산을 통해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자산( $b$ )은 위험성이 없으며 일정한 수익률( $r$ )을 보장한다. 반면, 위험자산( $k$ )은 음(-)의 수익률도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dR = Rdt + \sigma dW \tag{1}$$

안전자산은 은행 예금 또는 국채 등 위험성이 전혀 없는 자산을 통한 저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위험자산은 주식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험자산은 위험성이 높은 반면, 기대수익률 역시 안전자산에 비해 높다( $R > r$ ). 개별 가구들의 총자산( $a$ )은 이 두 자산의 합으로 결정되며, 각 자산에 대한 투자가 경제의 생산성(효율성)을 결정하게 된다.

각 가구는 효용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 제약하에서 소비( $c$ )와 위험자산( $k$ )에 대한 투자를 선택한다. 소득 수준이  $y_j$ 인 가구( $j \in \{l, h\}$ )는 다음과 같은 효용 극대화 문제를 푼다.

$$V_j(a) = \max_{c,k} \int e^{-\rho t} u(c) dt \tag{2}$$

s.t.

$$da = [Tr + (1 - \tau_j^y)]y_j + (ra + (R - r)k - c)]dt + \sigma kdW$$

$$a \geq -\phi, k \geq 0.$$

$V_j(a)$ 는 가구의 가치함수(value function)이며  $da$ 는 가구 자산의 변화분을 나타낸다.  $Tr$ 은 균형 재정을 유지하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을,  $\tau_j^y$ 는 근로소득이  $y_j$ 인 가구의 근로소득 세율이다. 가구의 효용함수는 CRRA함수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u(c) = \frac{c^{1-\gamma}}{1-\gamma} \tag{3}$$

연속시간(Continuous-time) 모형에서는 위 문제를 다음 Hamilton-Jacobi-Bellman(HJB)을 통해서 풀 수 있다.

$$\rho V_j(a) = \max_{c,k} u(c) + V_j'(a) [Tr + (1 - \tau_j^y)y_j + (ra + (R - r)k - c)]$$

$$+ \frac{1}{2} V_j''(a) (\sigma k)^2 + \lambda_j (V_{-j}(a) - V_j(a)) \tag{4}$$

본고에서 활용한 모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가구가 두 가지의 자산을 통해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자산( $b$ )은 위험성이 없으며 일정한 수익률( $r$ )을 보장한다. 반면, 위험자산( $k$ )은 음(-)의 수익률도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률은 식 (1)과 같이 결정된다.

식 (6)에서 위험자산( $k$ )에 대한 투자는 초과수익률( $R-r$ )이 클수록 늘어나며, 위험성( $\sigma^2$ )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험 회피계수( $\gamma$ )가 클수록 작아진다.

앞의 식 (4)를 바탕으로 1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c]: u'(c) = V_j'(a) \tag{5}$$

$$[k]: 0 = V_j'(a)(R-r) + V_j''\sigma^2 k$$

$$\Leftrightarrow k_j(a) = -\frac{V_j'(a)}{V_j''(a)}\left(\frac{R-r}{\sigma^2}\right) = \frac{1}{\gamma}\left(\frac{c_j(a)}{c_j'(a)}\right)\left(\frac{R-r}{\sigma^2}\right) \tag{6}$$

식 (5)와 식 (6)은 각각 가구의 소비와 위험자산 결정식이다. 식 (6)을 살펴보면, 위험자산( $k$ )에 대한 투자는 초과수익률( $R-r$ )이 클수록 늘어나며, 위험성( $\sigma^2$ )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험 회피계수( $\gamma$ )가 클수록 작아진다.

한편,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인  $a \geq -\phi$ 는 다음과 같이 반영된다.

$$V_j'(a_{\min}) \geq u'(Tr + (1 - \tau_j^y)y_j + ra_{\min}) \tag{7}$$

아울러 연속시간(Continuous-time) 모형의 주요한 장점 중 하나는 분포의 변화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명 분포의 변화를 관장하는 Kolmogorov Forward Equation(KFE)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frac{\partial g(a,t)}{\partial t} = \frac{\partial}{\partial a} [s_j(a)g_j(a,t)] + \frac{1}{2} \frac{\partial^2}{\partial a^2} [(\sigma k)^2 g(a,t)] - \lambda_j g_j(a) + \lambda_{-j} g_{-j}(a)$$

$$\text{where } s_j(a) = Tr + (1 - \tau_j^y)y_j + ra + (R-r)k_j(a) - c_j(a) \tag{8}$$

본고는 균제상태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분포가 정상상태(stationary)일 것을 다음과 같이 강제한다.

$$\frac{\partial g(a,t)}{\partial t} = 0 \tag{9}$$

본 모형에서 안전자산은 개인 간의 채무의 개념으로, 균형에서 채무의 총량은 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균형 조건으로는  $B=0$  또는  $A=K$ 가 만족되어야

한다. 정부는 균형 재정을 준수하여 정부이전  $Tr$ 은 다음과 같이 정부 조세수입과 일치한다.

$$Tr = (1 - \tau_1^y)y_1 \frac{\lambda_2}{\lambda_1 + \lambda_2} + (1 - \tau_2^y)y_2 \frac{\lambda_1}{\lambda_1 + \lambda_2} \quad \text{식 (10)}$$

나아가 본 모형에서 총생산은 다음과 같다.

$$Y = \sum_{j=1,2} \int [Rk_j(a) + y_j] g_j(a) da \quad \text{식 (11)}$$

식 (11)에서 총생산은 위험자산의 수익과 근로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생산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은 노동의 생산 결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 모형에서 생산은 노동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결정된다.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총생산은 늘어나게 된다.<sup>2)</sup> 본 모형에서 노동소득은 외생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분석에 큰 의미는 주지 못한다.

위 모형은 Achdou et al.(forthcoming)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모형을 풀었다. 이를 위해 모수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위험 회피계수  $\gamma$ 는 널리 사용되는 값인 2를 사용하였고, 시간 할인율  $\rho$ 는 0.04를 사용했다. 차입제약  $\phi$ 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년 평균임금의 절반 값을 사용하였다. 2019년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인원은 12만 8,967명이며 이들의 금융소득 신고액은 17만 7,782억원, 비금융소득 신고액은 19만 2,940억원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금융소득 신고자의 1인당 비금융소득 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1억 5천만원이며, 2019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3,708만원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따라서 고소득  $y_h$  금액을 일반소득  $y_l$  금액의 4배로 설정하였으며, 상위 소득을 받는 근로자 비중을 5%로 설정하였다 ( $(\lambda_1, \lambda_2) = (0.05, 0.95)$ ). 나아가 일반소득자와 고소득자의 평균 소득세율  $(\tau_1^y, \tau_2^y)$ 은 각각 3%와 20%로 설정하였다.

김인수·홍정훈(2008)에 따르면 한국의 주식 프리미엄은 약 1.4~5.3% 사이로 추정된다. 이에 맞춰 위험자산의 수익률과 변동성은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약 3~4%의 주식 프리미엄과 2%의 무위험 수익률이 발생하도록 설

식 (11)에서 총생산은 위험자산의 수익과 근로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 생산은 노동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결정된다.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총생산은 늘어나게 된다.

2) 참고로 위험자산의 위험성을 대변하는 수익률의 위너 과정(Wiener process)  $dW$ 는 평균이 0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에서는 총합이 0이 된다.

위험자산 수익률이 감소한 경제는 기준 경제에 비하여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며, 특히 자산 축적이 감소한다. 또한 자산분포를 나타내는 차입계약 비율과 지니계수 모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하였으며, 위험자산 평균 수익률은 4.5%, 연간 변동성은 35%로 설정하였다 ( $R=0.045, \sigma^2=(0.35)^2$ ). 모형 내 적용하는 과세제도에 따라 0.5%에서 약 3.8%의 주식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데, 과세가 없을 경우에는 3.8%의 주식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무위험 자산 수익률은 균형에서 결정되는데, 과세가 없을 경우 0.7%로 결정된다.

## 2. 위험자산의 특성에 따른 경제 비교

우선 기준 경제의 특성이 초과수익률과 위험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준 경제( $R=0.045, \sigma^2=0.35^2$ ),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기준 경제보다 0.5% 낮은 경제( $R=0.040, \sigma^2=0.35^2$ ), 그리고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기준 경제보다 높은 경제( $R=0.045, \sigma^2=0.40^2$ )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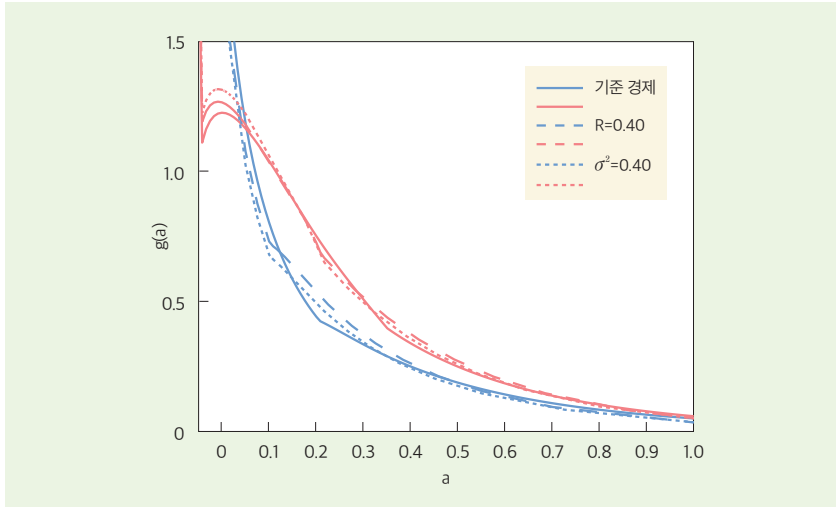
<표 4> 기준 경제의 비교

구분	기준 경제	$R = 0.040$	$\sigma = 0.40$
생산량	0.1204	0.1185	0.1189
자산	0.1192	0.0873	0.0865
이전지출(총세수)	0.0069	0.0069	0.0069
평균소득의 10배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가구 비율	0.0219	0.0106	0.0125
평균소득의 10배를 초과하는 자산 보유 가구의 총자산 비율	0.3427	0.1942	0.2432
차입계약 가구 비율	0.4233	0.4609	0.4678
자산 지니계수	0.6581	0.7163	0.7151
무위험 이자율	0.0069	0.0119	0.0061
리스크 프리미엄	0.0381	0.0281	0.0389

출처: 저자 작성

<표 4>는 각 경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위험자산 수익률이 감소한 경제( $R=0.40$ )는 기준 경제에 비하여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며, 특히 자산 축적이 감소한다. 수익률의 감소는 현 모형에서는 생산성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

[그림 1] 기준 경제 자산분포 비교



출처: 저자 작성

평균소득 가구는 전 구간에 걸쳐 기준 경제에 비해 분포가 악화되며, 자산이 낮은 가구는 증가하고 높은 가구는 감소한다. 따라서 상위 자산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다고 해서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에 자본과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산분포를 나타내는 차입제약 비율과 지니계수 모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차입제약에 근접한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위험자산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제( $\sigma = 0.40$ ) 역시 유사하게 나타난다. 초과수익률이 감소한 경제와의 주요한 차이로는 무위험 이자율과 주식 프리미엄의 차이가 있는데, 자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무위험 이자율이 감소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주식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감소할 경우 자산 보유 상위 가구들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로 해석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성급한 결론으로 보인다. [그림 1]은 각 경제들의 자산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푸른 선은 평균적인 근로소득을 받는 가구들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붉은 선은 근로소득이 높은 가구들의 분포를 나타낸다.<sup>3)</sup> [그림 1]에서 평균소득 가구의 분포를 살펴볼 경우, 전 구간에 걸쳐 기준 경제에 비하여 분포가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이 낮은 가구는 증가하고 높은 가구는 감소한다. 따라서 상위 자산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다고 해서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3)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고소득 가구의 경우 실제 분포에 10을 곱한 분포 값을 표기하였다.

본 모형에서 발생하는 통합금융소득은 양도소득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본 장에서 적용되는 과세는 금융투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는 이상적인 과세제도로, 현실과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 이로 인하여 현실과 모형의 과세효과가 현격하게 차이 날 수 있다.

## IV. 통합금융소득 과세

### 1. 분리과세, 단일세율

통합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경제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앞서 제시한 경제에 통합금융소득에 대한 14% 또는 20%의 단일세율을 부과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모형에서 발생하는 통합금융소득은 과세에서 정의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 역시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실현에 따라 과세가 되는 현실적인 양도소득 과세와는 다르게, 발생에 따라 과세되는 이상적인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 해석에서 특히 유념할 점은, 본 장에서 적용되는 과세는 금융투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는 이상적인 과세제도로, 현실과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sup>4)</sup> 이는 중요한 차이인데, 이로 인하여 현실과 모형의 과세효과가 현격하게 차이 날 수 있다.

통합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제의 경우 HJB식과 1계조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ho V_j(a) = \max_{c,k} u(c) + V_j'(a) [Tr + (1 - \tau_i^y) y_j + (1 - \tau^a)(ra + (R - r)k) - c] + \frac{1}{2} V_j''(a) ((1 - \tau^a) \sigma k)^2 + \lambda_j (V_j(a) - V_j(a)) \quad \text{식 (12)}$$

$$[c]: u'(c) = V_j'(a) \quad \text{식 (13)}$$

$$[k]: 0 = V_j'(a) (1 - \tau^a) (R - r) + V_j''(a) (1 - \tau^a)^2 \sigma^2 k \quad \text{식 (14)}$$

$$\Leftrightarrow k_j(a) = - \frac{V_j'(a)}{V_j''(a)} \left( \frac{R - r}{(1 - \tau^a) \sigma^2} \right) = \frac{1}{\gamma} \left( \frac{c_j(a)}{c_j'(a)} \right) \left( \frac{R - r}{(1 - \tau^a) \sigma^2} \right)$$

4) 현실의 과세제도 역시 폭넓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 해줄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본 장과 같이 즉각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위험자산 투자 결정식에서 과세에 따라 투자양상에 두 가지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식인 식 (14)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0 = \underbrace{V_j'(a)(1 - \tau^a)(R - r)}_{mb \text{ from ex.return}} + \underbrace{V_j''(1 - \tau^a)^2 \sigma^2 k}_{mc \text{ from additional risk}} \quad \text{식 (15)}$$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식 (15) 첫 항에서 표현된 초과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반면, 식 (15) 둘째 항에서 나타나듯 소득에 대한 위험성을 높인다. 따라서 분리과세는 각각의 효과 모두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과세의 총효과는 각각의 경로를 통해 효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식 (14)를 살펴볼 경우 과세는 직접적으로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세가 간접적으로 가구의 가치함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투자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즉,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총효용  $V_j'(a)$  이 증가할수록, 위험기피적 성향  $V_j''(a)$  이 감소할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특히  $V_j'(a)$  의 경우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로 인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지는 선형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기준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균형에서 채무의 총량은 0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균형 재정을 준수한다. 균형 조건으로는  $B=0$  또는  $A=K$ 가 성립하며, 정부 이전  $Tr$ 은 정부 조세수입과 같다.

$$Tr = (1 - \tau_1^y) y_1 \frac{\lambda_2}{\lambda_1 + \lambda_2} + (1 - \tau_2^y) y_2 \frac{\lambda_1}{\lambda_1 + \lambda_2} + \tau^a \sum_{j=1,2} \int [ra + (R - r)k_j(a)] g_j(a) da \quad \text{식 (16)}$$

<표 5>는 단일세율에 따른 통합금융소득 과세를 시행할 경우 나타나는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총생산은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총자산 역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세금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보다, 자산 축적의 효용이 감소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율이 증가할수록 차입제약에 걸린 사람이 증가한다. 나아가 자산이 많은 가구들의 전체 대비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는 기준 경제와 단일세율을 각각 14%와 20%로 적용했을 때의 자산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적인 임금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파란색 선으로 표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식(15) 첫 항에서 표현된 초과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반면, 식 (15) 둘째 항에서 나타나듯 소득에 대한 위험성을 높인다. 따라서 분리과세는 각각의 효과 모두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과세의 총효과는 각각의 경로를 통해 효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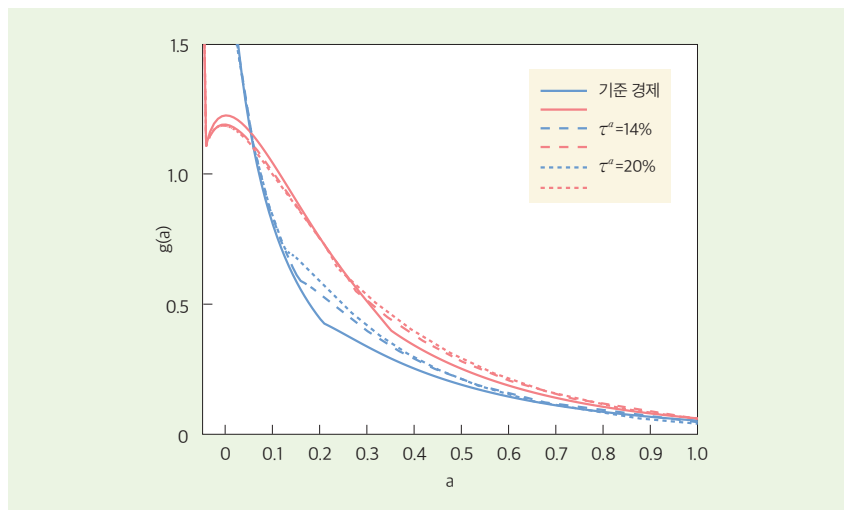
[그림 2]를 보면, 평균 임금소득을 갖는 가구(파란색 선)의 경우 분포가 “중산층”에서도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이 낮은 구간은 증가하고 높은 구간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 가구(붉은색 선)의 경우 분포가 다소 개선된다.

<표 5>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구분	기준 경제	단일세율, 분리과세(14%)	단일세율, 분리과세(20%)
생산량	0.1204	0.1198	0.1194
자산	0.1192	0.1062	0.0974
이전지출(총세수)	0.0069	0.0075	0.0077
평균소득의 10배를 초과하는 자산 보유 가구 비율	0.0219	0.0138	0.0100
평균소득의 10배를 초과하는 자산 보유 가구의 총자산 비율	0.3427	0.2144	0.1608
차입계약 가구 비율	0.4233	0.4302	0.4353
자산 지니계수	0.6581	0.6849	0.7022
무위험 이자율	0.0069	0.0180	0.0225
리스크 프리미엄	0.0381	0.0270	0.0225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단일세율 부과에 따른 자산분포의 변화



출처: 저자 작성

분포가 “중산층”에서도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이 낮은 구간의 분포는 증가하고 높은 구간의 분포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 (붉은색 선으로 표시) 분포가 다소 개선된다. 즉, 자산이 낮은 가구는 감소하고 높은 가구는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는 현 모형의 경우 세금이 손실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 위험도가 감소하여 소득 상황에 여유가 있을 경우 투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모형 경제의 세제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현실에서 반드시 이런 현상이 발생하리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 2. 종합과세, 누진세율

이러 통합금융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를 적용하였을 때의 경제 변화를 살펴보았다. 종합과세의 경우 통합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x$ 가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되도록 설정하였다. 누진세율은 한국의 현행 세율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평균소득을 2019년 평균임금 3,708 만원에 대응시키고, 소득  $x$ 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tau(x)$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tau(x)x = \int_{-\infty}^x \tilde{\tau}(z) dz \tag{17}$$

where  $x = y_j + ra + (R - r)k$

$$\tilde{\tau}(x) = \begin{cases} 0.06 & \text{과세소득 1,200만원 이하} \\ 0.15 & \text{과세소득 4,600만원 이하} \\ 0.24 & \text{과세소득 8,800만원 이하} \\ 0.35 & \text{과세소득 1.5억원 이하} \\ 0.38 & \text{과세소득 3억원 이하} \\ 0.40 & \text{과세소득 5억원 이하} \\ 0.42 & \text{과세소득 10억원 이하} \end{cases}$$

통합금융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를 적용하였을 때의 경제 변화를 살펴보았다. 종합과세의 경우 통합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x$ 가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되도록 설정하였다.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초과수익률을 가져다주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초과수익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은 감소한다. 투자 위험성 역시 소득이 늘어날수록 감소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제의 HJB식과 1계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ho V_j(a) = \max_{c,k} u(c) + V_j'(a) [Tr + (1 - \tau(x))(y_j + ra + (R - r)k) - c] + \frac{1}{2} V_j''(a) ((1 - \tau(x))\sigma k)^2 + \lambda_j (V_{-j}(a) - V_j(a)) \quad \text{식 (18)}$$

$$[c]: u'(c) = V_j'(a) \quad \text{식 (19)}$$

$$[k]: 0 = V_j'(a) [(1 - \tau(x))(R - r) - \tau'(x)(R - r)x] + V_j''(a) [(1 - \tau(x))^2 \sigma^2 k - \tau'(x)(1 - \tau(x))(R - r)\sigma^2 k^2] \quad \text{식 (20)}$$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한계세율의 변화에 따라 투자 결정이 더욱 복잡해진다. 우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식인 식 (20)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0 = V_j'(a) \left[ \underbrace{(1 - \tau(x))(R - r)}_{mb \text{ from ex.return}} - \underbrace{\tau'(x)(R - r)x}_{mb \text{ decreases}} \right] + V_j''(a) \left[ \underbrace{(1 - \tau(x))^2 \sigma^2 k}_{mc \text{ from additional risk}} - \underbrace{\tau'(x)(1 - \tau(x))(R - r)\sigma^2 k^2}_{mc \text{ decreases}} \right] \quad \text{식 (21)}$$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식 (21) 첫 항에서 표현된 초과수익률을 가져다주지만, 둘째 항에서 나타나듯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초과수익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은 감소한다. 위험자산 투자로 인한 위험성 역시 종합과세로 인하여 소득이 늘어날수록 감소한다. 즉, 종합과세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초과수익률이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나, 위험성 역시 감소하여 선형적으로 총효과의 방향성을 알기 어렵다.

아울러 앞선 경제와 마찬가지로 균형 조건으로는  $B=0$  또는  $A=K$ 가 성립하며 정부이전  $Tr$ 은 정부 조세수입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Tr = \sum_{j=1,2} \int \tau(x) x_j(a) g_j(a) da \quad \text{식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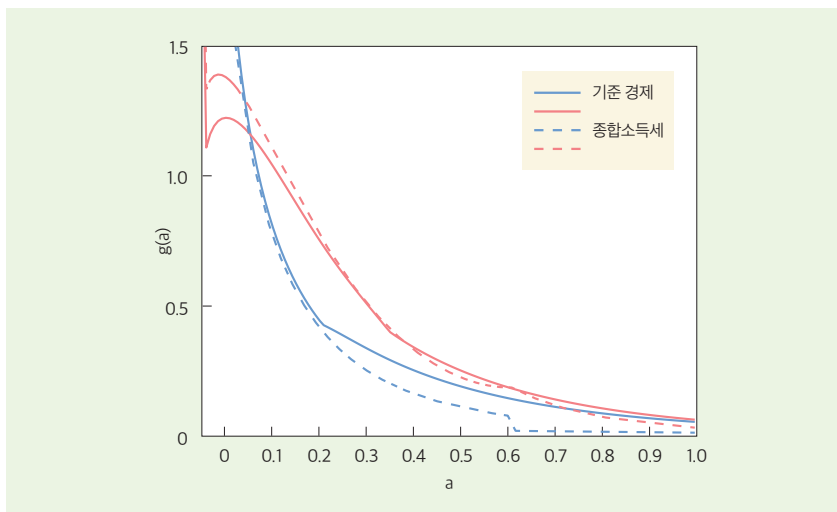
<표 6>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

구분	기준 경제	누진세율, 종합과세
생산량	0.1204	0.1194
자산	0.1192	0.0969
이전지출(총세수)	0.0069	0.0830
평균소득의 10배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가구 비율	0.0219	0.0172
평균소득의 10배를 초과하는 자산 보유 가구의 총자산 비율	0.3427	0.1763
차입제약 가구 비율	0.4233	0.4933
자산 지니계수	0.6581	0.6908
무위험 이자율	0.0069	0.0341
리스크 프리미엄	0.0381	0.0109

출처: 저자 작성

<표 6>을 보면 단일세율과 유사하게 총생산과 총자산이 감소하고, 차입제약에 직면한 가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다. [그림 3]은 평균 임금을 받는 가구와 고소득 가구 모두에서 분포가 전 구간에 걸쳐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자산분포의 변화



출처: 저자 작성

과세제도 간  
 비교 결과,  
 대체로 부과되는  
 총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생산성은 높아지고  
 자산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간의  
 비교로 한정할 경우,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뚜렷한 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종합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경제 변화를 나타낸다. 단일세율과 유사하게 총생산과 총자산이 감소하고, 차입제약에 직면한 가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다. [그림 3]은 자산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임금을 받는 가구와 고소득 가구 모두에서 분포가 전 구간에 걸쳐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과세제도 간의 비교

<표 7>은 앞서 수행한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리·비교하고 있다. 대체로 부과되는 총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생산성은 높아지고 자산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본고에서 분석한 경제 간의 비교로 한정할 경우,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차입제약 가구의 비중과 자산이 많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뚜렷한 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와 [그림 3] 간의 비교에서도 이는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고에서 나타난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제도의 효과와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제도의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비교한 두 과세제도는 한계세율, 실효세율 등 여러 가지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견으로는 단일세율이 14%일 경우 누진세율에 비하여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 모두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세제의 여러 요소들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분석 결과에서 총소득이 평균값인 사람은 실효세율이 약 12%로, 단일세율이 14%인 경제(약 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표 7>의 마지막 칸은 단일세율 14%를 유지하고 소득세율을 기존의 (3%, 20%)에서 (10%, 25%)로 인상하여 총소득이 평균인 사람의 실효세율이 종합과세를 적용하였을 때와 유사한 경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경제의 특성이 누진세율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표 7>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 비교

구분	기준 경제	단일세율, 분리과세 (14%)	단일세율, 분리과세 (20%)	누진세율, 종합과세	단일세율, 분리과세 (14%, 소득세 ↑)
생산량	0.1204	0.1198	0.1194	0.1194	0.1193
자산	0.1192	0.1062	0.0974	0.0969	0.0965
이전지출(총세수)	0.0069	0.0075	0.0077	0.0830	0.0151
평균소득의 10배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가구 비율	0.0219	0.0138	0.0100	0.0172	0.0108
평균소득의 10배를 초과하는 자산 보유 가구의 총자산 비율	0.3427	0.2144	0.1608	0.1763	0.1790
차입제약 가구 비율	0.4233	0.4302	0.4353	0.4933	0.4317
자산 지니계수	0.6581	0.6849	0.7022	0.6908	0.7037
무위험 이자율	0.0069	0.0180	0.0225	0.0341	0.0206
리스크 프리미엄	0.0381	0.0270	0.0225	0.0109	0.0244

출처: 저자 작성


<표 7>에서 단일세율 14%를 유지하고 소득세율을 (10%, 25%)로 인상한 경우, 경제의 특성이 누진세율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적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논의를 위해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통합금융 과세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각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피상적으로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모형을 통해서 전 계층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대체로 부과되는 총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생산성은 늘어나고 자산량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차입제약 가구의 비중이 크고 자산이 많은 가구의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뚜렷한 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과세의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향후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모형화한  
심도 깊은 연구가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의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의 누진성뿐만 아니라 실효세율과 다른 세제와의 관계 역시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구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과세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 세수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사용한 모형은 금융소득 과세를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은 모두 포함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특히 본문에도 기술하였듯이, 본고에서 검토한 과세제도는 소득의 발생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과세제도로, 배당 또는 주식의 매매 등을 통한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현실의 과세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 분석한 과세제도는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세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는 현실보다 효율적인 과세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모형에는 노동공급이 외생적으로 주어져 과세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며, 부동산과 같은 대체 투자 수단을 통한 저축 역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과세의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향후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모형화한 심도 깊은 연구가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2. 소득세』, 2017.
- 김인수·홍정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주식프리미엄 퍼즐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제21권 제1호, 2008, pp. 1~32.
- 영화조세통람, 『조세편람 2019』, 2019.
- 윤성만·이상엽,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와 기업의 배당정책」,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17권 제1호, 2017, pp. 95~111.
- 전병욱,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세무와 회계연구』, 제6권 제3호, 2017, pp. 151~182.
- Achdou, Yves, Jiequn Han, Jean-Michel Lasry, Pierre-Louis Lions, and Benjamin Moll,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in Macroeconomics: A Continuous-Time Approach,” *Review of Economic Studies*, forthcoming.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1.asp?cinfo\\_key=MINF5720100720165645&menu\\_a=110&menu\\_b=100&menu\\_c=4000](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1.asp?cinfo_key=MINF5720100720165645&menu_a=110&menu_b=100&menu_c=4000), 검색일자: 2020. 5. 11.

# 비만세 해외 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choi@kipf.re.kr)

##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서구 국가의 비만을 증가와 소아 비만을 증가시키는 많은 우려의 요인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국가에 비해 비만에 대한 염려가 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체형이 변화하며, 비만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상당한 규모로 연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2)에 의하면,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약 1조 8,972억원에서 2011년에는 2조 6,91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2)이 추정하고 있는 비만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흡연이나 음주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체중과 비만의 문제는 식생활 습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정책은 주로 식품에 대한 규제나 가격정책이 활용되어 왔다. 비만문제에 대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국가들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교정세(corrective tax)로서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비만 과세의 형태는 가당음료세(Sugar-Sweetened Beverage Tax: SSB Tax), 탄산음료세(Soda Tax), 과자세(Snack Tax), 정크푸드세 등으로 그 과세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프랑스에서는 소금을 함유한 식품에 대한 소금세도 고려 중이라고는 하나, 대체로 설탕(sugar)의 과다 섭취가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일일 섭취 권장량 이상의 과다한 설탕을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 SSB)를 중심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비만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만세 부과의 해외사례와 가당음료 과세의 타당성과 효과 및 쟁점 사항 등을 고찰하며 비만세 도입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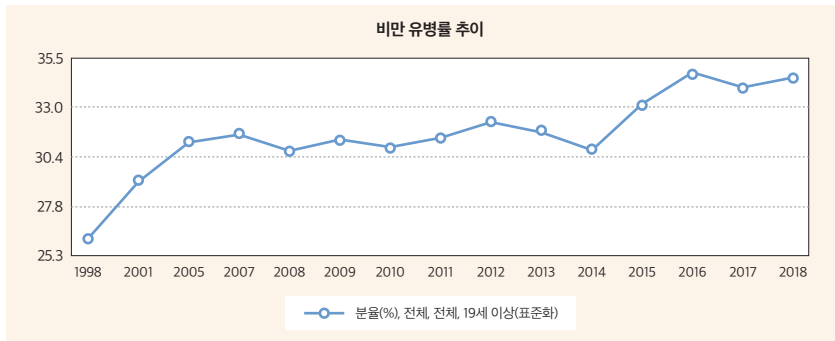
## II. 비만과 과체중의 현황과 문제점

경제성장에 따른 풍요는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 부족을 비롯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비만과 과체중의 증가가 초래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성인 인구의 약 44%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orld Bank, 2020). 우리나라의 비만인구도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여,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2018년에는 34.6%에 달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청년층의 비만율보다는 중장년층의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만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신진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음식 섭취량에 비해 운동량이 줄어드는 등 비만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비만율은 30대를 정점으로 이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여성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경우 출산 등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와 신체적 변화가 비만율의 연령대별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주로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비만율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성인 인구의 약 44%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만인구도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여,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2018년에는 34.6%에 달하고 있다.

[그림 1]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한국)

(단위: %)



출처: KOSIS,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 유병률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1&vw\\_cd=MT\\_ZTITLE&list\\_id=117\\_11702\\_B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1&vw_cd=MT_ZTITLE&list_id=117_11702_B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자: 2020. 10. 1.

비만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비만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GDP를 감소시키고  
늘어나는 재정지출과  
국가부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세율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표 1> 소득계층별 비만 유병률 추이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하	29.6	32.2	33.7	32.1	33.2	38.4	38.4	38.5
중하	32.3	31.9	37.2	34.2	33.0	34.1	33.4	35.8
중	29.1	33.8	31.3	30.4	33.1	32.2	35.4	32.3
중상	30.9	31.0	29.9	30.7	30.4	32.0	33.6	33.8
상	32.5	27.4	30.4	31.3	24.8	30.1	33.3	30.6

출처: KOSIS,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 유병률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702\\_N101&vw\\_cd=MT\\_ZTITLE&list\\_id=117\\_11702\\_B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702_N101&vw_cd=MT_ZTITLE&list_id=117_11702_B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자: 2020. 10. 1.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 암, 신진대사 저해 증후군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sup> 일반적으로 과체중일수록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과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2019)에 의하면 과체중은 향후 30년간 인류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며, 신규 당뇨병의 약 60%, 심혈관질환의 18%, 치매의 11%, 암 발생의 8%가 과체중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52개 국가의 케이스에서는 과체중으로 인한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이 향후 30년 동안 약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과체중과 연관된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OECD(2019)에서는 국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향후 30년 동안 과체중에 기인한 의료비 지출이 평균적으로 전체 의료비 지출의 약 8.4%에 달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비만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비만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GDP를 감소시키고 늘어나는 재정지출과 국가부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세율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소아비만은 소아기 비만 이후 생애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비만은 학업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OECD(2019)에 의하면 비만인 아동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놀림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2개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비만과 학업 성취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비만이 아닌 아동은 비만인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13%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아동비만은 학업

1) 비만과 과체중은 신장과 몸무게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로 정의된다.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경우는 과체중, 35 이상인 경우는 비만으로 분류되고 있다.

성취도를 낮추고 이후 교육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적자원 형성, 나아가 거시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비만에 비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비만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주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파악되는데, 경제성장으로 인한 풍요로움은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과체중을 증가시켜 왔다. WHO(2015)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심지역의 비만율이 농촌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urbanization)는 교통, 주거, 식음료 서비스, 식품유통 등을 발달시킴으로써 비만이 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였다. 도시화로 인한 교통망의 발달, 자가용의 증가 등은 운동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 소비가 힘들어지는 생활환경과 생활패턴을 초래하게 된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와 외식이 늘어나면서 식생활 문화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여성노동 참가율의 증가로 간편식과 가공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식품업체도 점차 반조리식품, 조리식품, 음료 및 가공식품 등의 상품 개발과 광고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가공식품, 음료 등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설탕 등 인공감미료의 함량이 높아 비만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Ⅲ. 해외 국가의 비만 관련 과세 사례

비만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비만을 유도하는 건강위해식품의 광고 및 홍보에 대한 규제, 식품함유물의 라벨링 강화, 메뉴상 칼로리 표기 등의 강화, 학교급식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OECD(2019)에 의하면 비만을 억제하기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의 정책수단은 1달러 투자액 대비 5.6달러의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만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나 프로그램 개발 외에 가격정책적인 측면에서 비만 유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2개 국가에서 비만을 억제하기 위한 과세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과세는 주로 필수 식료품이 아니면서도 일일 권장 섭취량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게 하여 직접적인 비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당음료를 비만세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당음료 외에도

**아동비만은  
학업성취도를 낮추고  
이후 교육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적자원 형성과  
거시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비만에 비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2개 국가에서 비만을 억제를 위한 과세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과세는 주로 필수 식료품이 아니면서도 일일 권장 섭취량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게 하여 직접적인 비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당음료를 비만세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로청량음료 등을 과세하는 국가도 있고, 소금(헝가리)과 카페인 함유 식품을 과세하는 국가도 있으며, 고칼로리 정크푸드(멕시코), 초콜릿이나 사탕(헝가리), 과자나 반조리식품을 과세하거나 불포화지방산(nonsaturated fat)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비만 과세는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태평양 섬이나 카리브해 섬 등과 같이 비만율이 높은 조그만 섬나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도 최근 들어 가당음료세류의 비만세 부과를 시작하는 등 OECD 국가들의 식품에 대한 비만세 부과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당음료세 부과는 주로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시작되었다. 덴마크는 비만세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였으나, 비만세의 범위를 포화지방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형태까지 도입을 시도했다가, 도입 1년 만인 2013년에 비만세가 전면 폐지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사모아 등 태평양 섬나라들을 중심으로 가당음료세 부과가 증가되기 시작하여, 핀란드, 헝가리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도 2000년대 후반부터 가당음료세 부과를 시작하였다. 태평양 섬나라들이나 카리브해 섬나라 등에서 부과되는 가당음료세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조그만 섬나라의 특성상 관세형태로 가당음료수입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의미의 비만을 억제하기 위한 비만세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2014년에 가당음료세 부과를 시작하였다. 멕시코의 가당음료 소비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가당음료 제조업체의 점유율과 영향력이 매우 커서 가당음료세 부과 시 만만치 않은 기업저항과 로비가 있었다. 멕시코의 가당음료세는 부피당 부과하는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되었는데, 멕시코 가당음료세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에서는 가당음료세가 가당음료 수요를 생수로 대체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의 부피 단위 가당음료세 도입 이후 바바도스, 칠레, 프랑스,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 및 펜실베이니아 주도 부피 단위의 가당음료세를 부과하였다.

헝가리의 건강식품세(Public Health Product Tax)는 가당음료 외에도 비스킷, 잼, 초콜릿 및 사탕, 빵 등 설탕을 많이 함유하는 식품과 소금을 함유하는 식품까지 광범위한 건강위해식품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영국의 청량음료산업부담금

(Soft Drink Industry Levy)은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는 제품 재조합(product reformulation)을 유도하는 것을 일차적인 정책 목표로 하여, 설탕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기간을 정하고 부과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당음료세는 설탕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청량음료에 50%, 에너지드링크에 100%와 같은 매우 높은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의 가당음료세는 종량세의 형태로, 가당음료 수요를 생수로 대체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해외 국가의 가당음료세 및 비만유발식품 과세 사례**

국가	과세 대상	과세방식	과세유형	세율	기준 연도
브루나이	가당음료, দুয়ু, 초콜릿음료, 커피음료, 첨가 음료 (우유 및 과일주스는 제외)	구간별 설탕 함량 과세	종량세	- 가당음료 0.4 BND: 설탕 함량 > 6g/100ml - দুয়ু 0.4 BND: > 설탕 함량 > 7g/100ml - 초콜릿음료 0.4 BND: 설탕 함량 > 8g/100ml - 커피음료 및 첨가음료 0.4 BND: 설탕 함량 ≥ 6g/100ml	2017
칠레	모든 무알코올가당음료 (에너지드링크 및 물 포함) (100% 과일주스와 우유 제외)	구간별 설탕 함량 과세	종가세	10%: 설탕 함량 < 6.25g/100ml 18%: 설탕 함량 > 6.25g/100ml	2015
콜롬비아	가당음료		부가가치세	19%(생산, 유통, 상업화 모든 단계에 부가가치세 부과)	2019
쿡제도	가당음료 (artificially sweetened water는 제외)	단일구간 설탕 함량 과세	종량세	설탕 함량 1g당 0.0098NZD	2014
바레인	탄산음료 및 탄산음료 원재료 (무첨가 탄산수는 제외)		종가세	청량음료: 50% 에너지드링크: 100%	2017
바베이도스	가당음료, 탄산음료, 주스, 스포츠드링크 등 (100% 천연과일주스, 코코넛워터, 우유 및 연유는 제외)		종가세	10%	2015
벨기에	청량음료, 가당 및 인공첨가물 함유 무알코올음료 및 워터, 청량음료 원재료	부피 기준	종량세	0.068유로/L (액체타입 재료: €0.41/L 가루타입 재료: €0.68/kg)	2016
도미니카 공화국	청량음료, 에너지드링크, 가당음료 및 설탕 함량이 높은 기타 식품 포함		종가세	10%	2015
에콰도르	가당음료, 제로칼로리 청량음료 (유제품, 생수, 50% 이상 천연과즙주스는 제외)		종가세	- 가당음료 10%: 설탕 함량 < 25g/L - 에너지드링크: 10% - 설탕 함량 > 25g/L인 음료: \$ 0.0018	2016
에스토니아	무알코올음료, 탄산음료, 가당음료, 100%과일주스, 가당우유	구간별 부피 기준	종량세	- 설탕 함량 5~8g/100ml 가당음료: €0.2/L - 설탕 및 인공감미료 함량 5~8g/100ml: €0.2/L - 설탕 함량, 설탕 및 인공감미료 함량 > 8g/100ml: €0.2 /L	2018

국가	과세 대상	과세방식	과세유형	세율	기준 연도
피지	국산 가당음료 및 탄산음료, 수입 가당음료, 파우더 및 원재료	부피 기준	종량세 /관세	- 국산 가당음료: 35 \$/L - 수입 가당음료 및 원재료: 32%(2\$/L)	2017
핀란드	무알코올음료	부피 기준	종량세	- 무가당 청량음료 & 생수: €0.11/L - 가당 청량음료: €0.22/L (연간 생산량 <50,000L 이하인 제조업자는 면세)	2011
프랑스	가당음료,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	설탕 함량 기준	종량세	- 설탕 함량 1g/100ml부터 11g/100ml 초과까지 점진적(sliding scale) 과세 (11g/100ml 초과 음료는 €0.2/L) - 제로칼로리 가당음료: €0.03/L	2018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가당음료	부피 기준	종량세	- 국산 가당음료: CFPF 40/L - 수입 가당음료: CFPF 60/L	2002
헝가리	- 청량음료, 에너지드링크, 인공감미료 농축액 - 소금과 카페인 함유 스낵, 반조리식품, 가당식품도 해당됨	부피 기준	종량세	- 청량음료: HUF 7/L - 농축액: HUF 200/L	2011
인도	탄산수, 가당음료		특별소비세	40%(28% 일반소비세+12% cess)	2017
아일랜드	무알코올음료, 설탕 함량이 5g/100ml 이상인 가당음료 (과일주스나 유제품 제외)	구간별 부피 기준	종량세	- 설탕 함량 5g/100ml 이상 8g/100ml 미만: \$ 20/L - 설탕 함량 8g/100ml 이상: \$ 30/L	2018
키리바시	무알코올음료, 가당음료 및 감미음료 (과일주스, 채소주스 및 과일주스 농축액 제외)		증가세	40%	2014
라트비아	가당음료 (설탕 첨가율이 10% 미만인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설탕 및 인공감미료 등이 첨가되지 않는 기능성 워터는 제외)	부피 기준	종량세	€0.074/L	2016
말레이시아	탄산음료, 무알코올음료, 감미음료 (우유, 과일주스, 채소주스도 포함, 설탕 함량이 12g 이하인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	구간별 부피 기준	종량세	- 설탕 함량 5g/100ml 초과 청량음료, 설탕 함량 7g/100ml 초과 우유음료, 설탕 함량 12g/100ml 초과 과일주스, 채소주스: MYR 0.4	2019
모리셔스	국산 가당음료, 수입 가당음료, 주스 및 우유, 청량음료	설탕 함량 기준	종량세	MUR 0.03/g	2013
멕시코	- 가당음료 (우유 및 요쿠르트 제외) - 100g당 275kcal가 넘는 고칼로리 식품	부피 기준	종량세 /증가세	- 가당음료: MXN 1/L (에너지드링크 및 파우더, 농축액, 시럽 등: 25% 특별세 부과) 고칼로리 식품: 8%	2014
노르웨이	- 인공감미료, 설탕이 첨가된 무알코올음료 - 시럽농축액	부피 기준	종량세	- 무알코올음료: NOK 3.34/L - 시럽농축액: NOK 20.32/L	2017
오만	에너지드링크, 탄산음료(탄산수 제외)		증가세	- 탄산음료: 50% - 에너지드링크: 100%	2019
팔라우	청량음료	부피 기준	수입관세	\$ 0.28175/L	2003
파나마	가당무알코올음료, 시럽농축액 (유제품, 설탕 함량 7.5g/100mg 이하인 주스는 제외)		증가세	- 가당 탄산음료: 7% - 기타 무알코올 가당음료: 5% - 시럽농축액: 10%	2019
페루	무알코올음료, 가당음료, 무알코올 맥주	설탕 함량 구간별	증가세	- 설탕 함량 6g/100ml 이상인 음료: 25% - 설탕 함량 6g/100ml 미만인 음료: 17%	2018

국가	과세 대상	과세방식	과세유형	세율	기준 연도
필리핀	주스, 티, 탄산음료, 에너지드링크, 스포츠드링크, 가루로 된 음료 (100% 과일주스, 채소주스, 유제품, 식사대용음료, 의약품료는 제외)	부피 기준	종량세	- 설탕 및 인공감미료를 포함한 음료: PHP 6/L - HFCS를 함유한 음료: PHP 12/L	2018
포르투갈	가당음료	구간별 부피 기준	종량세	- 설탕 함량 80g/L 미만인 음료: € 0.08 - 설탕 함량 80g/L 이상인 음료: € 0.16	2017
카타르	탄산음료, 에너지드링크		증가세	- 탄산음료, 농축액: 50% - 에너지드링크: 100%	2019
사우디 아라비아	가당음료		증가세	- 에너지드링크: 100% - 가당음료: 50%	2019
사모아	청량음료	부피 기준	종량세	WST 0.4/L	2008
세이셸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수입음료 (우유음료 포함) (국내생산 무첨가 과일주스, 우유는 제외)	부피 기준	종량세	SCR 4/L	2019
남아프리카 공화국	설탕 함량이 4g/100ml를 초과하는 가당음료 (설탕 함량이 4g/100ml 미만인 과일주스, 채소주스, 우유음료는 제외)	설탕 함량 기준	종량세	설탕 함량 4g/100ml를 초과하는 음료에 대하여 ZAR 0.021/g	2018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청량음료, 초콜릿드링크, 스포츠드링크, 아이스 티, 커피음료, 에너지드링크, 과일주스, 채소주스, 가당 우유, 우유대체드링크, 밀크셰이크, 과일우유 (천연과일주스, 알코올음료, 슈가프리 청량음료, 인공감미료가 포함되지 않은 우유대체드링크는 제외)	구간별 부피 기준	종량세	- 설탕 함량 5g/100ml~8g/100ml 음료: € 0.08/L - 설탕 함량 8g/100ml 초과 음료: € 0.12/L - 소비자에게 100% 세금 전가할 의무 부여	2017
스리랑카	탄산음료, 과일음료	설탕 함량 기준	종량세	\$ 30/g	2017
세인트 헬레나	설탕 함량이 15g/L를 초과하는 탄산음료	부피 기준	종량세	£0.75/L	2014
태국	청량음료, 탄산음료(제로슈가 포함), 가당 탄산음료, 가당 생수, 과일주스, 채소주스	구간별 부피 기준	종량세 /증가세	- 설탕 함량 6g/100ml~8g/100ml 음료: THB 0.1/L - 설탕 함량 8g/100ml~10g/100ml 음료: THB 0.3/L - 설탕 함량 10/100ml~ 14g/100ml 음료: THB 0.5/L - 설탕 함량 14g/100ml 초과 음료: THB 1/L - 2023년부터 2년마다 세율이 인상될 예정임 • 과일주스와 채소주스: 10% • 소다수, artificial mineral water, 탄산음료 (제로슈가 포함): 14%	2017
통가	설탕이나 감미료를 포함한 청량음료	부피 기준	종량세	TOP 1/L	2013
아랍에미리트	탄산음료(농축액, 파우더, 젤 등 원재료 포함)		증가세	- 탄산음료: 50% - 에너지드링크: 100%	2017

국가	과세 대상	과세방식	과세유형	세율	기준 연도
영국	설탕 함량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와 재료 (국산, 수입음료 포함) (우유드링크, 우유대체드링크, 천연과일 주스, 무가당 음료, 알코올대체드링크, 의료용 혹은 특정 목적의 드링크 제외)	구간별 부피 기준	종량세	- 설탕 함량 5g/100ml-8g/100ml 음료: £0.18/L - 설탕 함량 8g/100ml 초과 음료: £0.24/L	2018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소다수, 에너지드링크, 아이스티, 인공감미료 (분유, 유제품, 천연과일주스, 채소주스, 식사대체음료, 인공감미료 첨가음료는 제외)	부피 기준	종량세	¢1/oz	2015
미국 (나바호 자치국)	가당음료		증가세	2%	2015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바니)	소다, 에너지드링크, 아이스티, 인공감미료 (분유, 유제품, 천연과일주스, 채소주스, 식사대체음료, 인공감미료 첨가음료는 제외)		종량세	¢1/oz	2017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	설탕 함량 5g/12foz를 초과하는 무알코올음료 (우유제품, 분유, 알코올음료, 의료용 음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럽이나 파우더는 제외)	부피 기준	종량세	¢2/oz	2017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가당 무알코올음료, 소다, 100%아닌 과일주스, 스포츠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향미 워터(flavored water), 커피음료, 차음료, 알코올드링크와 혼합 용도로 쓰이는 무알코올음료, 시럽		종량세	¢1.5/oz	2017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25kcal/12foz를 초과하는 인공감미료를 포함하는 음료, 소다, 스포츠드링크, 에너지드링크, 가당차음료 포함	부피 기준	종량세	¢1/oz	2017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공감미료를 포함한 음료, 가당음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시럽 및 파우더, 소다, 에너지드링크, 과일주스, 커피음료, 가당 차 음료 포함 (40kcal/12oz를 초과하지 않는 음료와 우유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료, 100%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식사대용 음료, 분유, 농축액은 제외)	부피 기준	종량세	- ¢0.75/oz - 총수입이 \$2,000,000~ \$5,000,000인 제조업자: ¢0.75/oz+¢1/oz	2018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25kcal/12oz를 초과하는 설탕 및 감미료 첨가 가당음료, 가당음료 제조에 쓰이는 시럽이나 파우더 (100% 과일주스, ASBs, 분유, 우유드링크는 제외)	부피 기준	종량세	¢1/oz	2018
바나투	가당 탄산음료, 가당 생수 및 가당 탄산수	부피 기준	종량세	VUV 50/L	2015

출처: World Bank, *Taxes on Sugar-Sweetened Beverages: Summary of International Evidence and Experiences*, 2020에서 재인용

## IV. 가당음료와 비만 과세

### 1. 가당음료 과세의 타당성

#### 가. 가당음료 소비와 비만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 SSB)는 설탕이나 옥수수시럽(High-Fructose Corn Syrup: HFCS)과 같은 감미료를 포함하는 무알코올음료로서, 청량음료, 에너지드링크, 스포츠드링크나 100%가 아닌 과일주스나 채소주스, 커피음료, 차음료, 향미 워터(flavored water), 각종 과일맛 우유 등이 가당음료에 해당한다. 가당음료 중에서도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등 제로칼로리나 저칼로리 인공감미료를 첨가한 다이어트 음료 혹은 제로청량음료 등은 제로칼로리 가당음료(Low/zero-Calorie Sugar-Sweetened Beverage: LCSBs)로 명명된다. 대체로 가당음료세(SSB tax)를 부과하는 해외 국가들에서는 제로칼로리 가당음료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로칼로리 가당음료까지 포함하여 과세하는 국가도 있다.

가당음료는 음복 즉시 흡수되는 유리당(free sugar) 형태의 설탕 함유량이 매우 높으며, 대체로 청량음료 600ml 1병 기준 64g의 설탕(15~16티스푼, 256칼로리)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당음료의 이러한 높은 설탕 함유량은 소금이나 기타 불포화지방산에 비해 비만과 과체중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채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당음료 소비는 포만감을 주거나 식사 대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당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식사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낮은 열량 식품 간 대체율은 가당음료의 음복이 과체중을 쉽게 초래하도록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콜라와 같은 청량음료 등은 상당히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가당음료의 습관적 복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등 당뇨병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당음료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가당음료가 과체중과 비만에 매우 높은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으며(Bleich and Vercaemmen, 2018), 제2형 당뇨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Schulze et al., 2004), 심혈관계 질환과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Malik and Hu, 2019)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당음료의 높은 설탕 함유량은 비만과 과체중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채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당음료의 습관적 복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등 당뇨병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당음료세 부과를 통해 보다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가당음료세의 타당성이 존재한다. 가당음료세를 높인다 하더라도 음료가 아닌 다른 식품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전반적인 영양학적 관점에서의 우려는 적다.

나. 가당음료 소비에 대한 교정세(corrective tax) 부과에 이론적 근거

가당음료 소비는 일일 권장량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도록 하는 동시에 가당음료 소비가 다른 식사량을 쉽게 줄이지는 못하므로 비만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비만은 결국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는 담배나 주류와 같은 건강 위해행위에 비해 가당음료 소비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가당음료 소비의 사적 비용(private cost)이 낮아지므로 최적 소비량보다 많은 가당음료를 소비할 수 있다.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나 사회경제적 비용과 같은 가당음료 소비로 인한 외부성(externality)이 있기 때문에, 가당음료에 피구세(pigouvian tax)류의 교정세 부과를 통해 외부성을 내재화하고 가격을 높여 가당음료 소비를 줄이므로써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가당음료세의 전반적인 사회후생효과는 불확실할 수도 있다. 가당음료 소비가 비만의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생애의료비적인 측면에서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는 생애의료비에 불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가당음료세의 사회후생효과에 음(-)의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당음료세에 대한 교정세 부과에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은 가당음료 소비의 위해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혹은 인지하더라도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온정주의(paternalism)적 간섭이라는 측면에서이다. 가당음료세 부과를 통해 보다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가당음료세의 타당성이 존재한다. 가당음료세를 높인다 하더라도 가당음료세가 음료가 아닌 기타 다른 식품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전반적인 영양학적 관점에서의 우려는 적다.

## 2. 가당음료 과세의 효과

### 가. 가당음료세와 가당음료 가격

가당음료세가 부과될 때 과세된 음료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가당음료세가 부과될 때 과세된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abrera Escobar et al., 2013; Colchero et al., 2015; Powell and Leider, 2020). 이때 소비자 가격 인상 폭은 가당음료세의 유형과 설계, 부과 대상이 되

는 음료군, 제조업체의 대응 전략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 판매처, 음료의 유형, 대용량 패키지 여부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필라델피아주에서는 과세분의 100%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가 하면, 버클리주의 경우는 약 50% 이하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olchero et al.(2015)의 연구에 의하면 멕시코의 북부지역에서는 과세분의 100%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멕시코의 남부지역에서는 과세분의 10% 이하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변이가 크다는 보고도 있다.

한편, 가당음료세의 가격 전가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Scarborough et al.(2020)은 영국의 청량음료산업세(Soft Drink Industry Levy: SDIL)의 가격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율이 높은 구간 제품들의 가격 변동률(pass-through rate)은 세율의 31% 정도이며, 세율이 낮은 구간 제품들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영국의 청량음료세는 소비자 수요를 겨냥하기보다는 제조업체를 과세하여 성분 재조합(product reformulation)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과세로 인한 청량음료 가격의 상승 폭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가당음료세와 가당음료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당음료세의 비만 억제효과는 가당음료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예측해볼 수 있다. 가격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가당음료세가 상당히 가격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당음료는 기호식품으로 필수재는 아니며, 이론적으로도 비필수재일수록 가격 변화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격탄력성이 높다. World Bank(2020)에 의하면 연구들마다 가격탄력성의 추정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가당음료의 가격탄력성은 0.79~1.37 정도로 추정되어 평균적으로 가당음료의 가격탄력성은 1.0 정도로 매우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가격탄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은경(2012)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서베이 조사를 활용하여 탄산음료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탄산음료의 가격탄력성을 0.34~3.77로 상당히 다양하게

**가당음료세가 부과될 때 과세된 음료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가당음료세가 부과될 때 과세된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당음료 수요가 매우  
가격탄력적이라는 것은  
가당음료세의 효과가  
설계와 과세 대상,  
타깃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당음료세의  
비만율 감소효과는  
저소득층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추정하고 있다. 성인보다는 청소년이 탄산음료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청소년의 가격탄력성은 성인의 가격탄력성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이 고소득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당음료 수요가 매우 가격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피구세의 최적세율이 가격탄력성과 반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당음료에 대한 최적세율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당음료세의 부과에 따른 소비자 가격의 인상률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가당음료 과세로 인한 가당음료 소비의 감소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결국 가당음료세의 효과는 가당음료세의 설계와 과세 대상, 가당음료세가 타깃으로 하는 지점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당음료세나 비만세의 경우 정책 목표의 설정, 과세 대상의 설정과 과세유형, 세율구조의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다. 가당음료세가 비만율에 미치는 효과

가당음료세는 가당음료 소비를 줄임으로써 비만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당음료세의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가격 변화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Vechino-Ortiz and Arroyo-Ariza(2018)의 연구에서는 콜롬비아의 가당음료 과세(SSB Tax)가 저소득층의 과체중률을 1.5~4.9%p 감소시키고, 비만율을 1.1~2.4%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경우 비만율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체중율은 2.9~3.9%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의 경우 저소득층의 비만율은 고소득층보다 높고, 저소득층의 과체중율은 고소득층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과 관련된 비만율에 대한 가당음료 과세효과는 저소득층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lessandro(2008)에서도 저소득계층일수록 가격탄력성이 높고, 가격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군별로는 옥수수, 알코올음료, 채소에 대한 과세를 낮추는 것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보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고, Legum콩, 설탕, 오일 및 지방에 대한 과세를 낮추는 것은 사회후생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안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 3. 가당음료세에 대한 쟁점사항

#### 가. 가당음료 제조업체의 강한 저항

가당음료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관련 제조업체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왔다. 가당음료세 도입 때마다 제조업체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으며, 제조업체의 강한 반발과 로비로 이미 도입된 가당음료세를 완화한 국가들도 있다. 가당음료세에 대한 반박 논리는 주로 기타 음료나 식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해당 제품에만 과세하는 것은 산업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입장과, 가당음료세를 과세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 또한 가당음료세의 건강증진 효과가 미흡하다거나, 가당음료세 도입으로 가당음료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국경지역 소비(cross border purchase)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가당음료세가 1930년대부터 도입되어 왔었고, 2011년에는 포화지방(saturated fat) 함량에 대한 과세도 도입되었으나, 가당음료세와 포화지방에 대한 과세는 곧 폐지되었다. 덴마크 비만세의 폐지는 제조업체들의 법률소송, 비만세가 고용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홍보 등 제조업체들의 저항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서도 가당음료세 도입 4개월 만에 제조업체의 로비와 더불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이유로 가당음료세 도입이 취소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료나 식품회사는 한두 개 대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당음료세나 비만세의 부과에 대한 기업의 로비는 매우 극심한 경향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당음료회사가 설탕세에 반대하기 위해 한 해에 쓴 광고홍보비용은 약 천만달러에 달했으며, 필라델피아주에서는 설탕세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에 천만달러를 기부하겠다는 기업 측의 로비가 있었다.

#### 나. 가당음료세의 대체효과

가당음료세의 효과는 가당음료세의 부과가 가당음료 소비를 얼마나 줄이느냐와 가당음료세가 과세되는 가당음료 외에 과세되지 않는 음료의 소비를 얼마나 늘리느냐는 대체효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가당음료는 과세하고 제로가당음료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 제로가당음료의 소비나 과세되지 않는 과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료나 식품회사는 한두 개 대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당음료세나 비만세의 부과에 대한 기업의 로비는 매우 극심한 경향이 있다.

**가당음료세의 대체효과는 가당음료 설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다. 가당음료 과세 시 생수 등의 건강한 대체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음료군에 대해 동시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

주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단음료 등의 소비가 늘어나, 설탕 섭취량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당음료세의 대체효과는 가당음료의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다. 가당음료를 과세할 때 가당음료의 건강한 대체품인 생수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음료군에 대해 동시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에서 도입되었다가 폐지된 불포화지방 과세와 같은 경우, 대체효과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불포화지방 단일 영양소를 과세하는 경우, 설탕이나 전분과 같은 기타 식품으로의 대체효과가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식품군에 과세해야 건강한 식품소비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야채 등 건강식품에 대한 보조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가당음료세의 대체효과에 관한 연구 문헌들의 결과는 상당히 다양하다. Colchero et al.(2015)에서는 멕시코의 경우 가당음료세 부과는 가당음료를 생수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기타 비과세되는 칼로리 음료 등으로 수요가 대체되지는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Fletcher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소다 과세가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보다 값싼 고칼로리 음료로 수요를 대체시키는 효과가 있어, 과체중이나 비만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다세는 과세 대상이 된 소다음료에서 주로 값싼 과일주스로 소비가 대체되는 현상을 보였고, 기타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이라던지 싼 식품으로는 대체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 가당음료세의 역진성과 소득계층별 함의**

가당음료세나 비만 유발식품에 관한 역진성 논의는 가당음료나 불포화지방, 설탕 및 정크푸드 등의 식품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경우 가장 가난한 저소득층이 값싸게 접근할 수 있는 식품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가당음료세나 비만세의 대체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고,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식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역진적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일반소비세의 역진성 논의와 유사한 것으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 세금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당음료 소비가 많고 정크푸

드나 값싼 음식의 소비가 많으므로, 건강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저소득층은 더욱 많이 노출되는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가당음료세 등 비만세가 부과되는 경우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 변화는 고소득층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을 수 있다. Vechino-Oritz and Arroyo-Ariza(2018)와 Alessandro(2008)의 연구에서도 가당음료세의 가격탄력성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가당음료세 부과로 인한 비만과 체중의 감소효과 또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날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건강평등(health equality)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가당음료세 등 비만세를 부과하는 국가들 중 가당음료세의 세수를 건강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가당음료세 등 비만세 세수를 저소득층 건강증진, 비만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소득계층 간 불평등 이슈는 더 줄어들 수 있다.

#### 4. 가당음료세 등 비만 과세의 유형과 설계

가당음료세와 같은 비만세가 효과적일 수 있으려면 대체효과, 조세회피, 제조업체의 저항, 조세관할부처의 행정력 등을 잘 감안한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설당 함량이나 포화지방산 함량 등 함량 대비 과세를 하는 경우는 보다 고도의 과세 행정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비만 과세의 대상은 비만과 과체중을 초래하는 식품으로서 기타 다른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으로의 대체효과가 적은 식품이 될 것이다. 비만과 과체중을 초래하는 영양소는 설탕(sugar), 포화지방(saturated fat), 나트륨 등으로 간주되는데, 이 중 설탕은 직접적인 열량원으로 작용하면서도 청량음료, 향미 워터(flavored water), 우유드링크, 에너지드링크 등 가당음료에 고함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가당음료 섭취 시 손쉽게 일일 설탕 권장 섭취량을 넘게 되고, 또 가당음료 섭취는 기타 식사를 줄이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비만 과세의 대상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가당음료를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다.

비만 과세는 교정세인 피구세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excise tax)은 종량세(specific excise tax) 혹은 증가세(ad valorem tax)로 부과될 수 있다. 증가세는 제품가격에 일정률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제품의 특정 함량이나 부피 등에 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당음료세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가당음료세로  
인한 비만과 체중 감소  
효과가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날 개연성을  
시사한다. 비만세  
세수를 저소득층  
건강증진, 비만개선  
등에 활용하는 경우  
소득계층 간  
불평등 이슈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비만 과세는  
교정세인 피구세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은  
종량세 혹은 증가세로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증가세보다  
종량세가 효과적이므로,  
비만 과세의 설계 시  
종량세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특정 제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증가세보다는 종량세가 효과적이므로, 비만 과세 설계 시 종량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라고 하면 종량세와 증가세의 효과가 동일할 수 있으나, 실제로 가당음료나 청량음료 등 식품회사는 한두 개의 회사가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과점에 가까운 형태이다. 이렇듯 시장이 독과점에 가까운 경우, 정액세인 종량세의 한계수익곡선(MR curve)의 기울기는 정률의 증가세하의 한계수익곡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르게 되고, 균형 소비량은 종량세가 증가세보다 적게 된다. 가당음료 소비를 줄여 비만율과 과체중률을 줄이려는 목적하에서는 종량세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종량세와 증가세와 같은 과세유형은 제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 제품군에서도 저가의 제품과 고가의 제품이 존재하는데,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제품의 가격에 상관 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증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비싼 제품의 경우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싼 제품의 경우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증가세제하에서 제조업자는 원가가 낮고 품질이 낮은 저가의 제품 생산을 늘리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반면, 종량세제하에서는 고가의 제품 생산량을 늘릴수록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종량세는 판매량만 관리하면 되므로 조세 관리와 행정이 증가세에 비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세수입 측면에서도 종량세는 증가세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가세의 경우 세수 예측도 어렵고 세수 확보도 종량세에 비해 용이하지 않으며,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으로 비만 과세의 부과 대상 단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교정세로서 종량세를 활용하는 경우 제품의 부피나 무게 혹은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도 있고,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도 있다. 이는 교정세를 활용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가당음료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음료의 수량이나 부피 단위로 교정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가당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라 교정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가당음료세의 일차적인 정책 목표가 음료소비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가당음료를 통한 설탕 섭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일 경우 부피 단위보다는 설탕 함량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가당음료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에서는 증가세보다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피 기준 단위

로 종량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부피를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설탕 함량 단위로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소비자가 동일 구간 내에서는 가당음료 소비를 줄이고 다른 건강한 음료로 대체한다든지, 제조업체가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제품 재배합(product reformulation)을 할 유인은 주지 못하게 된다. 현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카탈루냐 지방),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같은 국가에서 구간별 부피 기준 세금(tired volume-based tax)을 부과하고 있다.

가당음료세를 부과하는 국가들 중 2/3 이상의 국가들이 종량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종량세 부과 국가의 대부분에서 부피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점차 구간별 부피 기준 혹은 설탕 함량에 따라 종량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부피 기준으로 가당음료세를 부과하다가 2018년부터 설탕 함량에 따른 구간별 과세방식으로 과세체계를 바꾸었다. World Bank(2020)에 의하면 종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7%(13개 국가)이고, 종량세 중 설탕 함량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국가는 10%(5개 국가)이며, 부피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가는 46%(22개 국가)이다. 또한 구간별 부피 기준(tired volume based)으로 부과하는 국가는 17%(8개국)이다.

가당음료세를 부과하여 가당음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줄이는 것 외에도, 제조업체에 과세를 함으로써 제조업체가 가당음료의 성분 재조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가당음료세의 일차적 목표를 둘 수도 있다. 가당음료세의 부과유형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가당음료세의 설탕 함량에 따라 가당음료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조업체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가당음료의 성분 재조합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V. 결론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서구 국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비만과 과체중의 건강 위해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비만과 과체중을 초래하는 식품에 대한 비만 과세의 도입도 향후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 비만세의 도입은 부과 대상이 되는 식품군에 대한 사전적 연구

**가당음료세의 일차적인 정책 목표가 음료소비 감소가 아닌 가당음료를 통한 설탕 섭취 감소일 경우 부피 단위보다는 설탕 함량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가당음료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종가세보다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만과 과체중의 건강 위해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를 초래하는 식품에 대한 비만 과세의 도입도 향후 고려할 수 있다. 효과적인 비만세 도입을 위해서는 과세의 유형, 정책 목표와 타깃 대상, 과세 행정력 등을 고려한 면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와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사전적 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효과적인 비만세 도입을 위해서는 비만 과세의 유형(종가세 vs 종량세), 비만 과세의 정책 목표와 타깃 대상, 비만세의 과세 행정력 등을 고려한 면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만세 부과 대상이 되는 식품의 시장구조, 대체품, 소비자 가격의 인상 정도, 비만세 부과에 따른 소비 감소(가격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비만세 부과 대상 식품군과 세율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만세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필수 식품이 아닌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설탕 섭취를 줄이는 방향의 비만세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설탕이 가장 직접적인 체중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고, 가당음료는 이러한 설탕 성분을 쉽게 섭취하도록 하면서, 주식을 대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가당음료세 도입 고려 시에는 과세되는 가당음료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비과세 음료로 수요 대체가 발생할 때, 더 건강한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당음료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의 형태가 소비 억제로 인한 비만을 감소에 효과적이며, 저품질 음료 생산을 촉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과세 행정상 관리도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당음료세를 제품의 부피나 무게에 직접적으로 부과하느냐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함량에 따라 과세하느냐는 설계상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가당음료세를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제품의 부피나 무게 기준으로 가당음료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피 단위로 과세하더라도 설탕 함량 등에 따라 건강 위해도를 결정하고 건강 위해도에 따라 구간별 부피 단위 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당음료세 부과 시에는 가당음료의 원재료가 되는 파우더나 시럽도 함께 과세할 필요가 있다.

실증연구들에 의하면 가당음료과세의 가격탄력성은 1에 가깝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당음료세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전가 비율이 높을수록,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의 가당음료세의 소비 감소효과와 비만을 감소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비만세는 아동비만 문제 해소에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비만을 감소와 건강 불평등 이슈의 해소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비만세를 도입한 여러 국가의 경험을 고려하면 가당음료세 등 비만세 도입 시 관련 기업의 저항과 로비가 상당하여 도입이 어려울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비만세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 형성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비만세는 가격을 통한 소비자 행위의 교정이라는 가격정책의 일환이지만, 효과적인 세제 설계와 과세 행정, 과세 저항, 과세 회피 등 도입 과정과 도입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 비만을 저감을 위한 비만세 도입을 고려할 때는 비만세 도입에 선행하여 비만을 감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의 강화, 식품 영양성분 표기 강화, 식당 메뉴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등 여러 가지 비가격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2012.

이은경,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가격정책의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Alessandro, N., “Price Elasticities and Tax Reform in Mexico,” *Applied Economics*, 40(18), 2008, pp. 2329~2335.

Bleich, S. N. and K. A. Vercammen, “The Negative Impact of Sugar-Sweetened Beverages on Children’s Health: An Update of the Literature,” *BMC Obesity*, 5(6), 2018, pp. 1~27.

Cabrera Escobar, M. A., J. L. Veerman, S. M. Tollman, M. Y. Bertram, and K. J. Hofman, “Evidence That a Tax on Sugar Sweetened Beverages Reduces the Obesity Rate: A Meta-analysis.” *BMC Public Health*, 13(1072), 2013, pp. 1~10.

Colchero, M. A., J. C. Salgado, M. Unar-Munguia, M. Molina, S. Ng, and J. A. Rivera-Dommarco, “Changes in Prices After an Excise Tax to Sweetened Sugar Beverages Was Implemented in Mexico: Evidence from Urban Areas,” *PLOS ONE*, 10(12), 2015, pp. 1~11 (doi: 10.1371/journal.pone.0144408).

Fletcher, J., D. Frisvold, and N. Tefft, “Substitution Patterns Can Limit the Effects of Sugar-Sweetened Beverage Taxes on Obesity,” *Preventing*

**비만세는 가격을 통한 소비자 행위의 교정이라는 가격정책의 일환이지만,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 비만세 도입을 고려할 때는 도입에 선행하여 비만을 감소를 위한 캠페인, 식당 메뉴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등 여러 가지 비가격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Chronic Disease*, 2013(10), 2013, pp. 1~3 (doi: 10.5888/pcd10.120195).
- Malik, V. S. and F. B. Hu, “Sugar-Sweetened Beverages and Cardiometabolic Health: An Update of the Evidence,” *Nutrients*, 11(1840), 2019, pp. 1~17 (doi: 10.3390/nu11081840).
- OECD, *The Heavy Burden of Obesity: The Economics of Prevention*, OECD Health Policy Studies, 2019.
- Powell, L. M., and J. Leider, “The Impact of Seattle’s Sweetened Beverage Tax on Beverage Prices and Volume Sold,” *Economics & Human Biology*, 37, 2020, pp. 1~10 (doi: 10.1016/j.ehb.2020.100856).
- Scarborough, P., V. Adhikari, and R. A. Harrington, “Impact of the Announce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UK Soft Drinks Industry Levy on Sugar Content, Price, Product Size and Number of Available Soft Drinks in the UK, 2015-19: A Controlled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PLoS Medicine*, 17(2), 2020, pp. 1~19.
- Schulze, M. B., J. E. Manson, D. S. Ludwig, G. A. Colditz, M. J. Stampfer, W. C. Willett, and F. B. Hu, “Sugar-Sweetened Beverages, Weight Gain, and Incidence of Type 2 Diabetes in Young and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2(8), 2004, pp. 927~934.
- Vechino-Ortiz A. I. and D. Arroyo-Ariza, “A tax on sugar sweetened beverages in Colombia: Estimating the impact on overweight and obesity prevalence across socio economic level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9, 2018, pp. 111~116.
- WHO, *Good Practice Brief: Public Health Product Tax in Hungary*, 2015.
- World Bank, *Support for Sugary Taxes: Taxes on Sugar-Sweetened Beverages: Summary of International Evidence and Experiences*, 2020.
- KOSIS,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 유병률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1&vw\\_cd=MT\\_ZTITLE&list\\_id=117\\_11702\\_B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1&vw_cd=MT_ZTITLE&list_id=117_11702_B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자: 2020. 10. 1.



## | 정책연구 |

### ■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

박노욱·윤성주·김현아

### ■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장우현·방세훈

### ■ 재정지출의 성질, 지속성, 발표 시기에 따른 경기부양효과

강동익

### ■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김현아·조임곤

### ■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김문정·오종현·조원기



#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저성장, 저물가, 저이자율로 특징 지어지는 경제 환경 변화가 재정정책 운용기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둘째, 재정정책 운용 여건의 변화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이 추진될 경우, 개선되어야 할 재정정책 운용 틀을 검토한다. 재정운용의 틀에 관한 연구를 위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저성장 추세의 지속은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저금리 및 저물가 지속 추세는 통화정책 공간의 축소와 더불어 재정정책 공간의 확대를 시사한다. 재정안정성과 관련된 국가부채 문제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추세로 인해 기회비용이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이고 적절한 투자 영역이 있다면 활용 공간이 커진다. 다만, 현재의 재정정책 의사결정 및 관리체계의 정치경제학적 제약 조건과 예측 불가능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재정운용은 여전히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동한다. 국가부채 규모 증가에 국가 신용등급이나 이자율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부채 규모의 증가는 여전히 위험관리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운용에서 총량적 재정규율 자체는 작동해야 한다.

일시적인 수요 또는 공급 측면의 충격이 경제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력효과에 관한 최근의 논의이다. 이력효과와 발생 가능성은, 경

기대응적 재정정책이 단기 수요 관리의 효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만, 이력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발생 원인에 부합한 재정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이 모두 이력효과와 발생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력효과를 완화시키는 적절한 재정정책의 기획과 운영도 도전적인 정책 과제이다.

이력효과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점검하되, 일시적 충격의 성격과 깊이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수요관리 목적의 경기대응적 재정정책과 중장기적인 이력효과와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이력효과와 존재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이력효과와 발생 원인과 이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 수단 개발에 주의가 필요하다. 재정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고, 수반되어야 하는 다른 정책수단과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력효과와 발생이 경기적인 가격조정 기제나 시장지배력의 집중에 있다면, 재정정책은 적절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재정승수는 기본적으로 단기적 경기대응 재정정책이 경제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그 크기는 해당 상황과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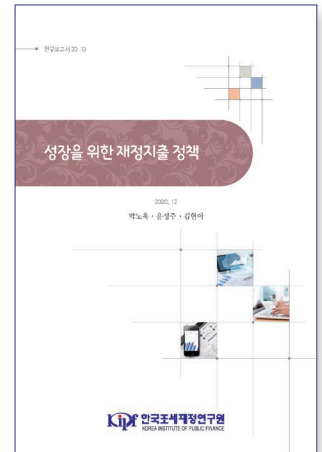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미약하므로, 재정승수를 이력효과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주요 쟁점들은 재정정책 공간의 확대 및 필요성 증가와 관련된 쟁점들로서 주로 거시 수준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즉,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추세 지속과 더불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충격과 관련된 현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다르게 지니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속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원인 진단과 개선 없이, 재정여력이 커지고 통화정책 공간과 유효성이 약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재정정책이 주된 경제정책 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이 중앙은행에 의해 상당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재정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져 왔지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재정정책 결정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정책은 조세 부담과 재정지출의 수혜와 관련된 소득재분배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가 되고 있다. 재정정책이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거시적 재정정책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정책 수립과 운영의 틀 자체도 변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부합한 정책수단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

재정정책 운용의 모범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우수한 경제적 성과와 사회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

B5변형/ 168면  
2020. 12.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통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 구성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재정규율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규율의 내재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재정기구의 존재이다. 독립적 재정기구의 역할 범위는 다양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최소의 기능은 경제전망, 세수전망, 기존 프로그램의 지출소요 등에 관한 추정치를 도출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출발이 되는 총량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인구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는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평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독립적 재정기구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재정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인식된 것이다. 재정정책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기제로서 독립적 재정기구가 필요하다.

네덜란드는 CPB(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가 경제·기후정책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Policy)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독립적 조직으로서의 위치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1945년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얀 틴베르헨(Jan Tinbergen)에 의해 수립되어, 확대 발전되어 왔다.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은, 봄에 발간되는 CEP(Central Economic Plan), 9월 발간되는 MEV(Macro Economic Outlook), 6월과 12월에 각각 발간되는 단기 및 수정전망 등 매년 네 가지 전망을 수행하는 것이다.<sup>1)</sup> 네덜란드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매년 시기에 따라 네 가지의 보고서로 내며, 새로운 정부 형성을 위한 선거 1년 전에 중기재정전망을 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gap)에 대한 진단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러한 전망은 재정운용 기초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출발점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새로운 정부의 중기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활용된다.

스웨덴은 Fiscal Policy Council을 재무부 내에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CPB에 비해서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기능도 자체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망치, 재정운용 상황, 설정된 재정목표 관리의 적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다. 스웨덴의 Fiscal Policy Council은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5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sup>2)</sup> 반면, 네덜란드의 CPB는 150명이 넘는 연구자들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중기 시계의 예산편성과 운용이다. 양 국가는 정부의 임기인 4년 시계의 중기예산을 편성하고, 부처별 중기지출한도를 설정하여 재정을 운용한다. 단년도 시계의 예산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정부 출범 시 4년도 시계의 다년도 예산이 편성된다. 이러한 중기예산편성과 운용은 재정의 총량적 규

율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예산편성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예산편성과 지출의 질(quality)을 높이는 데에 역량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경기대응 정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기적 시각의 운용이 필요하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 적절한 재정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년도 시각이 아니라 중기적 시각이 필수적이다.

셋째, 재정준칙의 설정과 운용이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이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간 일관성(time consistency)이 없는 재정운용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기에 확대된 재정지출이, 경제가 회복되어도 정상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나가는 형태로 재정이 운용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제 및 재정 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비교적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재정운용 행태를 보여 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근간에는 중기 시계의 재정준칙이 있다. 네덜란드는 새로운 정부 형성 시에, 임기 동안에 추구할 재정 총량에 관한 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된다. 총량 목표를 기반으로 부처별 중기지출한도가 설정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이러한 재정준칙이 보다 명시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2019년에는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을 35%로 설정한 부채 앵커(debt anchor)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새로운 정부 구성 시에, 경기순환 주기 내에, 일정 비율의 평균 흑자를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이 명시적으로 설정된다. 2019년 현재

1) CPB, "What does CPB do?," <https://cpb.nl/en/what-does-cpb-do>, 검색일자: 2020. 12. 1.

2) Finanspolitiska rådet, "About the Swedish Fiscal Policy Council," <http://www.finanspolitiskaradet.se/english/swedishfiscalpolicyCouncil/abouttheswedishfpc>.4.6f04e222115f0dd09ea8000950.html, 검색일자: 2020. 12. 1.

GDP 대비 비율로 0.33%의 재정흑자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준칙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설정 근거가 되는 주요 총량 지표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 확보, 재정준칙의 구속성 강화, 재정준칙 준수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독립성 강화, 재정준칙 위반 시의 수정과정 명시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가시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상당 부분 갖추어져 있으며, 재정준칙이 실질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재정사업에 관한 성과관리와 평가 그리고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지출검토(Spending Review)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의무지출로 볼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도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혜의 정도가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경제와 재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계속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0년의 포괄적 지출검토(Comprehensive Review)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경제위기 직후, 선거 직전에 20개 분야에 대한 지출검토를 추진하면서, 절감 목표를 20%로 설정하여 다양한 절감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부에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웨덴은 연금제도에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 요소를 담고 있어서, 정치적 의사결정 없이 자동적으로 연금 지급 수준 조정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재정 위험관리와 유지 가능성 확보를 위해 총량 관리는 독립적 재정기구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집권화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은 사업부처에 분권화되어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개별 부처의 예산에 관한 설명과 책임은 개별 부처가 의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중앙집권적 과정을 통해 부처별 지출한도가 설정되므로, 지출한도 내에서의 분권화된 책무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권화된 책무성의 장점은, 부처가 정책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동시에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구체적인 성과가 현장과 가깝게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세부사항까지 중앙집권적 통제하에 뒀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상황과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재정정책 운용 틀의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확보되는 재정정책 운용 체제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량적 재정규율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생산의 독립성 확보, 총량적 재정 목표가 정부 구성의 근간이 되는 체제, 분배 합의가 미약한 경기대응성 정책의 분리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재정정책 운용 틀을 기반으로 는 적시성·유연성·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이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둘째, 정부의 재정사업 기획 및 전달체계에 혁신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하향식 의사결정체계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사업 부처, 사업 담당자,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등에 분권화된 책무성을 부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범부처적 어젠다에 대해서는 중앙의 경영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총량에 대한 재정규율은 독립적 재정기구의 정보와 진단을 기반으로 재정당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사업의 기획 및 실행 관련 권한과 책무성

은 분권화하여 사업 부처와 사업 실행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중요한 범정부적 어젠다와 관련된 사업들은 중앙 조직이 견인하고 부처의 장벽을 넘는 해결책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성장친화적 재정여력 창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급속히 확대되는 사회안전망은 의무지출의 증가를 통해 재정구조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이는 곧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으로서의 재정정책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의무지출 사업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통한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재정운용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 예산당국이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회의 정치적 지지와 부처의 적극적 주인의식이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확대되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자동안정화 기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복지국가 기능의 확대와 경제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재정적 유지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을 일반 재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독립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급금액이 조정되는 기제를 심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지속가능성이 도전받는 시점이 곧 도래하므로, 그 이전에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및 수급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편 작업 이후에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최소화되는 자동안정화 기제를 심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20-10 『성장을 위한 재정 지출 정책』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방세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검토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이론 검토와 분석을 통해 도전적 연구과제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그리고 성과평가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과계획서와 국가연구개발평가시스템 제도 확인을 통해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에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기업데이터 기본통계와 연구개발비 통계,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이력 및 조달청의 공공조달 참여 이력자료를 패널자료로 연계하여 구축한 2015년 기준 중소기업 수 30만개, 지원 기업 수 14만개, 총 지원금액 64조원, 기업 연구개발비 10조원 규모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과 공공조달시장 제공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미친 영향,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 등을 각각도로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이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1. 도전적 연구개발의 조건 검토

도전적 연구개발 또는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연구와 정부 대책에서 언

급되고 있었지만,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는 사례는 의외로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전적 과제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전적 연구개발은 ① 본인(principal)인 국민 또는 공공기관이 대리인(agent)인 기업 또는 개인 연구자에게 연구를 의뢰하는 상황에서 ② 연구 속성상 대리인이 어떤 노력 수준을 선택하더라도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 연구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국민은 실제 대리인이 투입한 노력 수준을 유추할 수 없고 ③ 만일 대리인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경우 차선의 대안보다 더 높은 기댓값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이다.

이 정의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이끌어내기 힘든 가장 주요한 원인이 연구자의 노력 수준을 관찰할 수 없는 정보 비대칭성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도전적 연구개발에서 실패율 자체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현재 학계나 현장에서는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논의에서 높은 실패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실패율이 높다고 해도 그 기댓값이 크지 않다면 무모한 연구개발로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과제라고 볼 수 없음을 반영한다.

## 2.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유인구조 이론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의한 성격을 지닌 “도전적인 프로젝트”와 상대적으로 노력의 필요 수준이 낮

아 도전성이 낮은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모형화한 기초적인 연구개발 계약모형을 수립하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도전적 연구개발 보상체계에 상한 제약 ( $M$ )이 생겼을 경우 principal(본인)은 agent(대리인)가 “도전적 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는 “도전적 프로젝트”가 선택되는 것이 최선임에도, principal은 최소 보상을 고정보수로 제시하고 agent는 “안정적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principal이 제시할 수 있는 보상체계의 상한 제약을 완화하여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보상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보상체계에 하한 제약이 생겼을 경우(실패보수가  $m > 0$ 으로 강화되었을 경우)에도, agent의 “도전적 프로젝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principal이 감수해야 하는 기대비용이 최대 기대비용  $C^*$ 보다 커지게 되어, principal이 agent가 사회 최적인 “도전적 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결국 principal은 agent에게 최소한의 고정보상  $\bar{t} = t = m$ 을 제시하고 agent는 그에 따라 “안정적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균형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agent의 보상체계 하한 제약(실패보수 보장)을 완화하여 principal의 기대비용을 낮추거나 principal에게  $m$ 에 상응하는 충분한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principal이 agent의 “도전적 프로젝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최적 선택이 되도록 최대 기대비용  $C^*$ 를 높인다면, principal이 agent의 “도전적 프로젝트”를 유도하는 것이 균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지원에 있어 정부의 특성

과 역할을 고려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예산이 사전적으로 이미 정해져 연구개발을 의뢰하게 되는 공공 부문형 principal과 해당 계약에서 자유로운 민간 부문형 principal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 제약이 없는 민간부문형 principal만 존재할 경우에는 도전적 연구개발이 이뤄질 상황에서 공공부문형 principal이 존재함에 따라 오히려 안정적인 연구개발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적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공부문이 존재할 경우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구축할 이론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하겠다.

### 3. 기존 R&D 정책의 도전적 연구 기준 제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R&D 재정지출과 재정성과 관리에 있어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는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R&D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관리체계나 재정성과관리체계에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과지표나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재정성과관리체계나 부처의 과제관리 체계에 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한 안배는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고정과자 보상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흡했지만, 그에 앞서 도전적 연구과제 관리와 관련한 성과지표가 충분히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유인체계에 도전적 연구과제의 수행을 촉진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부의 유인체계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실제로 도전적 연구과제가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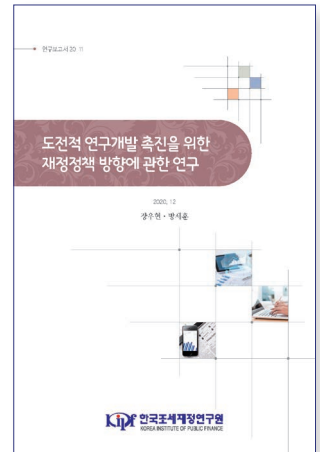
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조건이 만족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성과관리체계 자체에 도전적 연구개발과 관련한 명시적 조항들을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성과 연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기존 R&D 재정정책의 도전적 연구 기준 효과성 실증평가: 정책금융 및 공공조달 사례 분석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 및 이론분석, 제도분석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주요 수단이 되는 정책금융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책금융이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친 효과에 관한 추정 결과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원이력을 기업과 연도를 고려한 고정효과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은 유사 기업 대비 연구개발비 증분을 줄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체 분석 결과 정책금융 지원 기업은 지원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를 유사 기업 대비 1,654만원 적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기술금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은 두드러지게 유의한데,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지원 기업이 지원받지 않은 유사 기업에 비해 지원 이후 연구개발비 증분을 3,400만원가량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효과는 1기간은 물론 2기간 후에도 강건하게 확인되었다. 지원받은 기업들에 한정하여 금액의 효과를 보아도, 정책금융 100만

B5년형/ 110면  
2020. 12.



원이 추가 지원될 경우 연구개발비는 2만 6천원가량 감소되었고,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4만 8천원가량 감소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연구개발비 증분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중요하므로 지원연도를 가상으로 바꾸어 추정해 본 결과, 해당 결과는 가상의 지원연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출함으로써 추정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공공조달 정책의 연구개발비 영향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연구개발비 증분에 영향을 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조달 참여가 정책금융에 비해 연구개발비 왜곡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나타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과 별도로 동일 기간에 연구개발비의 증가가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는 전기 연구개발비를 증가시켰을 경우 총자산은 증가함이 확인되나 영업이익이나 총자산영업이익률 등 수익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공 시 지원 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유사 비지원 기업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조달의 경우 정책금융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책금융에 비해 연구개발 및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가 더 우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국한할 경우 2011~2015년의 연구개발비 확대는 기업성과의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를 더 투입한 기업의 수익성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 점은 많은 우려를 갖게 하는 결과이다.

## 5. 정책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기보다 높은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연구개발의 낮은 실패율은 도전적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종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의 낮은 실패율은 정보차원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율은 정책관리 대상으로 볼 때 적절한 성과지표가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도전적 연구과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의 성과관리체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 자체의 안정적인 관리를 주된 정책목표로 한다면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예산과 기금관리, 공기업 관리에 있어 성과의 편차는 높으나 성과의 평균은 높은 연구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적어도 도전적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성과지표는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고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초단계의 연구개발은 상대적으로 연구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성과에 대한 인정과 파급 속도도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공공적인 큰 규모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자금과 시장 제공 재정정책을 평가한 결과 지원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연구개발비 지출이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면 평균적인 생산성은 향상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서도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보증기금의 성과지표 가운데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등 오히려 안정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지표를 제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미래 경제 전략의 주요 부분임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자금이나 판로를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이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설계를 재검토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KIPR**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20-11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재정지출의 성질, 지속성, 발표 시기에 따른 경기부양효과

강동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재정승수를 논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정부지출 효과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정부지출의 경기부양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정부지출의 효과에 대해 제각기 상이한 결론에 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정책 결정자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로 인하여 정부지출의 경기부양효과를 논의하는 데 있어 많은 혼란이 발생하며, 인용하는 연구 또는 승수에 따라 정부지출의 당위성에 대한 결론이 뒤바뀌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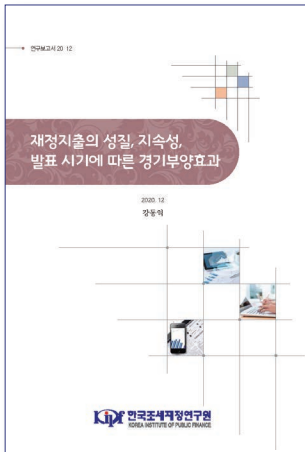
재정승수를 추정한 실증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 대표적인 어려움은 연구 결과들 간의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의 차이는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용한 자료의 차이, 방법론의 차이, 이외 여러 가정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목적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일견 일관성의 부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 연구자가 아닌 이상 승수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정부지출 승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재정승수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평균적인 정부지출의 경기부양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점이다. 물론 평균적인 정부지출의 경기부양효

과만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난해한 작업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 역량이 이에 집중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정책효과를 살펴보고자 할 때 이를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우선 여러 실증분석 결과들 간의 상이한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부양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여러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충격반응함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계정 정부지출 자료를 활용한 것과,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활용한 것에 따른 재정승수의 차이, 승수의 정의방식 차이에 따른 차이, 추세 처리방식에 따른 차이,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기간 차이에 따른 차이, 변수 정의방식에 따른 충격반응함수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 결과들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연구 결과들 간의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상이한 조건에 따른 정부지출 효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노력한다. 우선 한국 경제의 평균적인 경기부양효과를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하는 모형을 구현한 후, 모형을 통하여 여러 정책실험을 수행한다. 특히 정부지출 성질, 지속



B5변형/ 140면  
2020. 12.

성, 그리고 발표와 집행 간 시간의 간격이 존재할 때의 정부지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런 상이한 조건에 따른 정부지출 효과의 변화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모형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추정에 사용된 여러 구체적인 가정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 특히 승수계산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정의 여러 가정들에 변화가 있더라도, 같은 기간에 추정된 충격반응함수의 반응과 형태가 유사한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지출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집계하는 국민계정과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도 경제의 반응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정에 따라 경제의 반응 경로조차 상당히 다르게 추정된 경우는 2000년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였을 경우 정도였다. 또한 이는 추정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반응 자체가 변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으며, 자료의 문제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추정 결과들은 대체로 일관성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추정방식이 정부지출의 효과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승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들이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들을 살펴볼 때 단순히 계산된 승수 값만을 살펴보기보다는 추정과정에서부터 전체적인 충격반응함수의 형태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승수만을 바탕으로 연구들을 단순 비교할 때 커 보였던 차이들이 조금 더 면밀히 탐구할 경우 일관성 있는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연구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일반 독자와 정책 결정자들의 부담과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결과의 단순 소비자가 아닌 연구에 사용된 가정들과 추정된 결과들의 정합성 및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연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들은 한 연구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의한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떤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정책 결정자들이 학문적 논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실망스러운 결론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일정한 전문성을 갖췄을 때 각종 연구 결과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실증적으로 추정되는 충격반응함수를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하는 모형을 구성하여 실증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정부지출 발표와 집행 기간 사이의 기대효과, 정부지출 성질에 따른 경기부양효과, 그리고 정부지출 충격 지속성의 차이에 따른 경기부양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본 모형에서는 정부지출에 대한 발표와

집행 시점 사이에 많은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경제를 재현하고자 한 본 모형에서 정책 발표와 집행 사이의 시점에서는 총생산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대효과까지 반영하여 승수를 추정할 경우, 총재정승수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지출의 지속성에 따라 경제의 반응이 상당 부분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속성의 차이가 앞서 살펴본 국민계정 자료와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정부지출에 대한 GDP 충격반응함수의 차이를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지출 성질에 따라서도 경기부양효과 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정을 변형시킨 실증분석을 통하여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했으며,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분석을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제Ⅲ장과 제Ⅳ~Ⅴ장의 분석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정부지출에 대한 경기반응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다양한 상황에서 정부지출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정부지출의 효과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본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지출 효과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20-12 『재정지출의 성질, 지속성, 발표 시기에 따른 경기부양효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황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을 통한 중앙 재원의 지방으로의 이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국제비교 면에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양적 규모가 아닌 지역 간 분포에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연 재정분권 정책이 이러한 집중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가 본 연구의 초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의 재정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 어젠다였음에도 시장에서의 집중이 매우 강해 국가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이라는 지역 간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는 여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분권정책은 이러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최소한의 조치이자 최대 노력으로 실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정분권정책은 지방으로의 전체 양적 이양규모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주요 재정분권정책 수단으로 삼은 것은 지방재원 증가, 이른바 ‘순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의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측정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광역자치단체로의 지방재정 규모 증가는 확실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낙

후지역 자주재원 감소의 문제는 형평화 개선의 후속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재정분권정책이 지역 간 경제력 격차 완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현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로드맵에 따라 향후 이전재원의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정부 간 재정 이전 비중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균형발전과의 관계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론적·실증적으로 각 변수 간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 간 세율경쟁을 전제로 구성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 관한 전통적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론적으로도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어떤 제도적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들 통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은 재정분권정책이 시장기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핵심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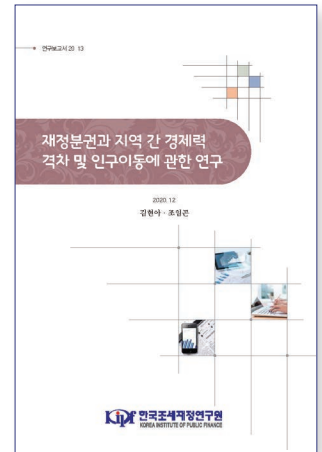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정부가 지역 간 경제력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재정분권정책을 실시

할 때,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최선의 정책 대안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산업 기반 역시 수도권에 존재하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서도 과연 선진국들처럼 지방세수의 증가를 통한 재정분권이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정책과 인구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정분권의 주요 정책 목적을 균형발전에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 국토가 골고루 정주 기반을 갖추게 되어 어느 지역에 살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받고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증가하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전재원이 지역 간 인구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증분석에서는 직관적인 가설에 따라 재정잉여가 클수록, 즉 해당 지역의 지방세와 세출규모의 차이가 클수록 인구흡수 요인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해당 지역의 주민이 내는 공공서비스 비용인 세금보다 공공서비스 공급규모가 클수록 인구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내용은 재정학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재정잉여 분포는 인구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방세 규모와 역관계를 보여주고 있음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시장요인을 통제된 후, 전세가격은 해당 지역의 진입비용적인 성격이 있음을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반면, 이전재원 규모가 큰 지역 중 지방교부세보다는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는 지역이 재정잉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들로 인구이동이 유의하게 증가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B55번형/ 175면  
2020. 12.



또한 본 분석은 재정잉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도 간 분석 결과, 시장요인을 통제하고 난 후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거나, 과표 수준(지방세)이 높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유인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급여성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하여 인구비례적인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인구이동과 유의한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의미하는 바는 인구가 많고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과표수준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일 경우, 동일한 세율로 공공재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면 과표수준이 높은 지역, 즉 공공서비스가 우수한 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과표수준이 높고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수도권 지역이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인구 흡수 면에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첫째, 분권의 가치실현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정책 어젠다이며, 이를 수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건인’이라는 정책은 기타 균형발전정책과의 조율로써 성

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둘째,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 완화 분석에 있어서 ‘1인당 지표’와 ‘총량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인구집중’ 정도에 따른 재정분권 정책 영향도를 각각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시장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 효과를 감안하고 나면, 재정잉여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방세율이 다르지 않은 가운데, 공공서비스 전체 수준에 대한 민감도는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권 국가에서 지향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공공서비스 수준 증가와 해당 지방세 간의 연계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러기에는 인구분포가 매우 불균형하기에 재정을 통한 분권수준 강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재정분권의 본래 의미인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확대를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본다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식 외에도 자치분권 개선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 틀 안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국고보조금의 포괄화’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평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재정격차 완화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을 참고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용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포괄사업화는 재정분권의 또 다른 대안일 수 있다. 급여성 복지지출을 제외한 자본지출과 인프라 구축 성격의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포괄화를 통한 지방의 사업결정권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가 가능하므로 재정 책임성 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총량적인 규모 증가인 ‘순증’이

더욱 중요하다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재정비용 증가도 감내해야 함을 본 분석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본 연구는 재정분권의 대상이 전 국민이 살고 있는 전 국토이므로 재정분권정책의 수단 또한 중앙과 지방 간 이전재원 전체와 재정사업 전체를 같이 놓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하에서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할 때 비로소 실현이 가능하다. 이에 가시적이면서도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개편과제는 논의만 할 뿐 실행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 증가하는 지방재정 규모에 맞는 재정이출의 권한 확보, 자율적인 세율조정 권한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세입확보 노력,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와 공동비용부담 구조 개편 등 재정분권을 위한 근원적인 정책 모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20-13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원기 고려대학교 부교수

## 1. 문제의식

최근 청년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예산지원 및 조세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고용규모가 큰 기업에도 이러한 정책이 적용될 때, 결과적으로 일부 규모가 큰 기업에 조세지출 지원 및 예산지원이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정책의 효과성 및 정부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고려하고 있는 주요 메커니즘은 노동조정비용의 존재이다. 노동조정이란,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보통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가 경기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연동되는지 혹은 노동조정과 관련된 가변비용뿐만 아니라 고정비용이 존재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고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역시 외생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노동조정 행위 차원에서 정책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기업 특질별로 정책 참여를 통하여 감수해야 할 노동조정비용의 크기가 다르다면, 노동조정비용이 낮은 기업일수록 고용증대 정책에 쉽게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노동조정비용이 낮은 기업이 고용을 증대하더라도 그 고용이 정책으로 인해 순수하게 유발된 고용 증가분이 아니라 낮은 노동조정비용에 따라 단순히 정책에 탄력적으로 반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용규모

가 충분히 큰 기업의 경우 고용하려던 채용인원 규모가 클 수 있고, 특정 시점에 채용인원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조정하는 것 역시 용이할 수 있다. 요건주의 방식으로 정책이 운용될 때 정부는 고용을 증대한 만큼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해당 기업의 순고용 증가분이 명목상 보고되는 고용 증가분보다 적은 경우 나머지 증가분(전체 고용 증가분에서 순고용 증가분을 제외한 부분) 관련 정책 지원 금액은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청년의 고용장려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이 고용장려 정책 지원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정비용이나 기업의 규모별로 고용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검토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재정정책 외에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같은 조세지출 정책이 2017년 이후 도입 혹은 확대 운용되었다. 청년을 위한 주택 및 기숙사 공급정책,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의무제, 실업급여일수의 청년 대상 수급일수 확대, 근로장려세제의 연령 제한 제외 등의 정책 역시 유사한 시기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책이 한꺼번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단일한 정책의 효과를 단독적으로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면서 청년의 경제활동을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17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의 청년 경제활동 지표가 그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인 것이 이러한 정부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정책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초점을 맞춘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상당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인 데다 예산운용상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17년 하반기 도입 당시의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2018년 6월부터는 요건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때 지원기업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성장 유망업종 산업에서 전 산업 부문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원금액도 다른 장려금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3년간이라는 지원기간이 존재하며, 채용된 인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쏠림현상 및 예산의 조기소진 사태가 발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조기소진 사태 등이 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노동조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분석 결과 요약

제Ⅲ장에서는 일반적인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에 대한 정형적 사실을 구축하고, 청년고용을 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적자원(HR) 관리 부서의 존재 여부와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 확률을 고려한다.<sup>3)</sup> 전자가 한 단위 고용조정비용에 대한 영

향요인이라면, 후자는 총고용조정비용에 대한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두 개의 노동 유형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의 최적고용량 문제를 검토한다. 모형에서는 단위당 고용조정비용이 존재하고 노동유형별로 상이한 이직 확률이 존재함을 상정한다. 분석 결과, 상당히 일반적인 함수 가정하에서 특정 노동유형에 대한 임금보조금이 존재할 때, 지원 대상이 되는 노동유형에 대한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30인 이상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고용을 증대하는 경우에만 임금지원을 제공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 고용요건을 추가한 모형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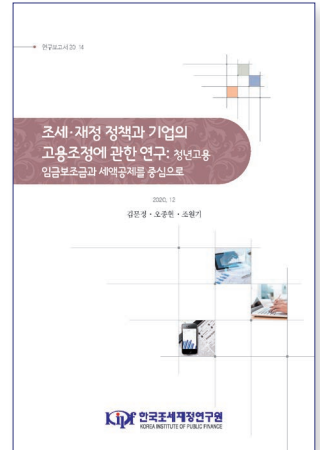
제Ⅴ장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량분석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 및 노동조정비용 수준에 따라 고용장려 정책에 지원한 확률(정책지원 결정)과 고용장려 정책 수혜기업의 순고용효과(고용효과 분석)를 추정한다. 정책지원 결정 분석에서는 고용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청년추가고용금에 지원한 확률이 높고, 지원인원이 많으며, 더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앞서 예상한 결과와 일치한다. 추가적으로 노동조정비용과 관련된 지표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을 때, HR 관리부서가 존재하는 경우 예상한 대로 추가 고용장려금 정책 지원의 확률을 높이지만 청년의 자발적 실업 확률은 정책 지원 확률에 대하여 분명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청년의 자발적 실업 확률 지표에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할 확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더 높은 노동조정비용을 부

3)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할 때 보통 노동수요적 측면을 고려하지만, 본고에서는 자발적 이직이라는 노동공급적 측면 역시 고려한다. 이는 사업체 본연의 고용조정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발적 이직률이 높은 사업체의 경우 그러한 상황 자체가 '외생적 환경'으로 간주되어 고용조정비용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담하는 한편, ‘청년을 기존에 고용하고 있었던’ 기업 일수록 추가고용장려금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노동조정비용 지표(종합비용지표)는 HR관리부서가 존재할수록, 청년의 자발적 실업 확률이 낮을수록, 기존 청년 피보험자가 존재하지 않을수록 그 지표 수준이 높아지도록 정의되었다. 분석 결과, 종합비용지표가 높을수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확률이 낮고, 지원인원도 적으며, 더 늦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등 저자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제VI장에서는 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제도 확대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하여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동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신청 기업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 관찰된다. 하지만 분석 결과 해당 제도 변화가 청년과 전체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동 제도를 통해 발생한 조세지출 중에는 동 제도가 아니더라도 고용을 증가시켰을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동 제도를 통해 세부담만 낮춘 사중손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고용증대세제가 기업의 고용인원을 증가시킨다는 통계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기업의 고용 증가 시점과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이 현재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비용이 현재 시점부터 발생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차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차는 당장의 비용 발생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에는 고용 의사결정 시 세제혜택을 고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증가시키더라도 세제혜택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고용 의사결정 시 세제혜택을 고려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B5변형/ 203면  
2020. 12.



### 3. 정책적 시사점

#### 가. 상대적·절대적 고용 증가분을 고려할 것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은 최소 고용인원이 1명,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으로 지정되어 있다. 100인 이상의 정책수혜 기업 중에는 고용인원이 4천명이 넘는 기업도 있는데, 이들 기업의 경우 3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고 애초에 계획했던 채용계획 차원에서 고용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최소 고용인원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조정 수준은 크되 고용조정 비율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예산 및 조세지출 집행을 위해서는 상대적·절대적 고용 증가분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 고용인원 규모 대비 10% 증가한 절대인원의 수만큼 지원하는 것이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절대인원 기준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기업규모가 큰 경우 상대적 고용 증가분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효과성 증대방안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급시기도 실제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이후이라는 점에서 정책으로 인한 고용증대 유인이 상당히 한정적일 수 있다. 물론,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관련된 정책지원 결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연구는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확인한 수준의 고용효과가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세지출 정책 자체 본연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제도만으로는 큰 고용증대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고용을 장려하는 세제와 재정정책이 가능한 유사한 정책설계 틀을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고용조정 시점에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이윤이 충분히 높을 경우 세제 혜택 역시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예상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 다. 유사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정책설계 정합성 제고

청년고용장려금과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 설계사항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준 시점 '피보험자 수'를 고려하지만,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기준 시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수치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청년고용

증대세제도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유지 조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의 규모별로 최소 고용요건은 존재하지만 일인당 지원금액이 동일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규모별로 최소 고용요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인당 지원금액이 상이하 다. (전술한 두 번째 제안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책 조건을 서로 일치시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혜받은 기업이 청년고용증대세제 혜택도 같이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적인 경우, 현재 각 정책의 지원 수준을 줄이면서도 더 큰 정책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20-14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4) 부차적으로 비용이나 매출을 성실신고하는 유인 역시 제공할 수도 있다.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http://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미국 - 미국 기업 대상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국가에 대한 관세보복 유예]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6월 2일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및 영국(이하 '이 사건 6개국'이라고 함)이 미국 글로벌 IT기업에 부과한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이 사건 6개국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함<sup>1)</sup>

- USTR은 2021년 1월 특정 국가들이 채택한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 그중 이 사건 6개국에서 채택한 디지털서비스세가 국제 조세원칙을 위반한 채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 또는 비합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USTR은 「통상법」 제301조<sup>2), 3)</sup>에 근거하여 이 사건 6개국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국가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을 밝힘

- 다만, OECD 및 G20을 통해 디지털세 관련 협상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180일 동안 관세보복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만일 국제적 협의를 통해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제재 관세를 실행할 것임을 경고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 [프랑스 - 코로나19 관련 202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 프랑스 정부는 2021년 6월 2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존 결손금 소급공제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함<sup>4)</sup>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은 2020 사업연도<sup>5)</sup>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공제액의 한도 없이 향후 5개 연도 동안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거나 5개 연도가 종료되는 때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
    - 공제액이란, 초과이익(직전 3개 사업연도의 과세이익에서 2020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조세기본법」 제219조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1)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Announces, and Immediately Suspends, Tariffs in Section 301 Digital Services Taxes Investigations," 2021. 6. 2.,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1/june/ustr-announces-and-immediately-suspends-tariffs-section-301-digital-services-taxes-investigations>, 검색일자: 2021. 6. 15.

2) 「통상법」 제301조란, 미국 교역 상대국이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때 해당 정책,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무역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법규 또는 행정명령을 말함

3) Federal Register,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Digital Services Taxe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6/05/2020-12216/initiation-of-section-301-investigations-of-digital-services-taxes>, 검색일자: 2021. 6. 15.

4)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1,"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4215\\_projet-loi](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4215_projet-loi), 검색일자: 2021. 7. 5.;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Proposes Temporary Softening of Loss Carry-Back in Amending Finance Bill for 2021," 2021. 6.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4\\_fr\\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4_fr_1.html), 검색일자: 2021. 6. 16.

5)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회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함

- 공제액을 차감하거나 환급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적용(일반 법인세율은 25%)될 것임
- 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려는 기업은 2021년 9월 3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청해야 함
- 이는 2021년 5월 18일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제도를 완화하라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권고는 공제액의 한도가 있으나 프랑스는 한도를 없앴<sup>6)</sup>
- 기존의 제도에 따르면 기업에는 직전연도의 과세이익에 대하여 100만유로<sup>7)</sup>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가 허용되며, 공제방식은 위 금액을 향후 5개 연도 동안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5개 연도가 종료되는 때에 환급받는 것임(「조세기본법」 제220조의 5)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의 결손금 소급공제액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즉시 환급을 허용하였음<sup>8)</sup>

- 2021년도 수정예산안은 또한 최저 및 중간 소득 근로자의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최저 및 중간 소득 근로자가 지급받은 성과급(1천유로<sup>9)</sup> 이하 또는 특정한 경우 2천유로<sup>10)</sup> 이하)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분담기여금 면제기한을 연장함
  - 최저 및 중간 소득 근로자란, 소득이 3SMIC(법정 최저 임금)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1SMIC는 시간당 10.25유로<sup>11)</sup>임<sup>12)</sup>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2021년도 554유로<sup>13)</sup> 한도에 대해 개인소득세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66%에서 75%로 확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벨기에 - 코로나19 관련 조세혜택 발표]**

- 벨기에 과세관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감 부가가치세율 적용기한 연장,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 공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기업

6)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default/files/communication\\_on\\_business\\_taxation\\_for\\_the\\_21st\\_century.pdf](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default/files/communication_on_business_taxation_for_the_21st_century.pdf), 검색일자: 2021. 6. 28.; IBFD, "European Commission Presents ATAD 3, EU Single Corporate Tax Rulebook and Business Tax Agenda for Next Years," 2021. 5.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5-19\\_e2\\_1%23tns\\_2021-05-19\\_e2\\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5-19_e2_1%23tns_2021-05-19_e2_1), 검색일자: 2021. 6. 28.

7) 2021년 6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4천만원임

8) Légifrance, "LOI n° 2020-935 du 30 juillet 2020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0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176557>, 검색일자: 2021. 7. 5.

9) 2021년 6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4만 7천원임

10) 2021년 6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9만 5천원임

11) 2021년 7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3,700원임

12) Service-Public, "Smic(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300>, 검색일자: 2021. 7. 5.

13) 2021년 6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만 6천원임



의 신주인수 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등의 조세혜택을 발표함

● 벨기에 과세관청은 2021년 5월 18일 마스크 등에 대한 경감 부가가치세율 적용 등 각종 조세정책의 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sup>14)</sup>

- 마스크 및 위생용품에 대한 6%의 경감 부가가치세율 적용

- 임대업자가 2021년 7월, 8월, 9월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30%의 소득공제 허용

- 일시적 실업 조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15%의 경감 원천징수세 적용

- 개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및 중간예납세 미납 시 사회보장분담금, 가산세 등 관련 제재를 적용하지 않고 재납부 계획 가능

● 벨기에 과세관청은 2021년 5월 31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 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함<sup>15)</sup>

- 2020년도 사회보장분담금의 납부기한은 1년 연장되며 이를 2021년도에 납부한 경우 경감 가능함

- 사회보장분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 개인납세자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2022년도 사회보장분담금은 2020년도, 2021년도의 사회보장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될 것임

- 2020년도 사회보장분담금을 2021년에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는 12개월의 분할납부가 가능함

● 벨기에 과세관청은 2021년 6월 14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의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2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정책의 적용기한을 연장함<sup>16)</sup>

- 2020년 3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받은 기업의 신주를 인수한 거주 및 비거주 주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주인수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20%의 세액공제가 허용됨

- 한도는 10만유로<sup>17)</sup>이며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주주는 제외됨

- 이러한 조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8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함

14) News.Belgium, "Prolongation des mesures de soutien économique jusqu'au 30 septembre 2021," <https://news.belgium.be/fr/prolongation-des-mesures-de-soutien-economique-jusquau-30-septembre-2021>, 검색일자: 2021. 6. 28.;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Extends Application of Reduced 6% VAT Rate for Face Masks and Hydroalcoholic Gels," 2021. 5.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31\\_b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31_be_1.html), 검색일자: 2021. 6. 17.

15) MyMINFIN, "Circulaire 2021/C/50 sur les mesures COVID-19 pour le paiement des cotisations sociales des travailleurs ind pendants," <https://eservices.minfin.fgov.be/myminfin-web/pages/fisconet/document/71a8e085-4285-4865-ba2b-b9f111c9bd21>, 검색일자: 2021. 6. 28.;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Clarifies Deductibility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or Self-Employe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3\\_be\\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3_be_2.html), 검색일자: 2021. 6. 17.

16)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Announces Temporary Tax Reductions for Individuals Acquiring New Shares in Affected Companies," 2021. 6.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14\\_be\\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14_be_2.html), 검색일자: 2021. 6. 17.

17) 2021년 7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400만원임

■ 벨기에 정부는 2021년 6월 7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미판매 수제 맥주에 대한 소비세 환급 등의 조치를 담은 법안을 제정함<sup>18)</sup>

-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주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이 2021년 7월 1일부터 경감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경감액은 근로자 5인당 2,400 유로<sup>19)</sup>임

- 심각한 영향을 받은 근로자란, 2021년 첫 분기의 업무량이 2020년 첫 분기의 50% 미만이거나 2020년도 마지막 분기의 업무량이 2019년도 마지막 분기 업무량의 50% 미만을 말함

- 미판매 수제 맥주에 대한 소비세를 환급함

-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 사이에 저장고에 투입되고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교체된 수제 맥주에 적용되며, 자세한 환급 절차는 추후 제정하는 법령에서 정함

- 수제 맥주는 저장고 등에 담아 판매하는 특성상 소비를 위하여 저장고에 투입되는 시점에 소비세가 부과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등으로 맥주를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교체해야 하고 교체 시 다시 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어 이 경우의 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 [독일 - 원천징수세 감면 절차 현대화법 발효]

- 독일 연방재무부가 지난 2020년 11월 20일 발의 했던<sup>20)</sup> 「원천징수세 감면 절차 및 자본소득세 원천공제인증서에 대한 현대화법(AbzStEntModG)」이 수정을 거쳐 연방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21년 6월 8일부터 발효됨<sup>21)</sup>

- 독일 정부는 해당 법을 통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을 받는 제한 납세의무자의 자본소득(Kapitalertrag)과 「소득세법(EStG)」 제50a조에 해당되는 소득<sup>22)</sup>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 신청 절차를 단순화 및 디지털화함

- 독일 정부는 디지털화 작업을 위하여 일회성 집행비용으로 약 4,517만유로<sup>23)</sup>가 소요되며 시스템 정착 후에는 연간 약 147만유로<sup>24)</sup>의 집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18) De Kamer, <https://www.dekamer.be/FLWB/PDF/55/2002/55K2002001.pdf>, 검색일자: 2021. 6. 27.;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Propose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Reductions and Other Measures," 2021. 6.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9\\_b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9_be_1.html), 검색일자: 2021. 6. 17.

19) 2021년 6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3만 5천원임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2월호, 2020, "독일-원천징수세액 감면 절차 현대화 법안 초안 발표,"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1003Ny9\\_0&rs=/viewer/result/kiTrend/202101///](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1003Ny9_0&rs=/viewer/result/kiTrend/202101///), 검색일자: 2021. 6. 21.

21) 독일 연방재무부, "Gesetz zur Modernisierung der Entlastung von Abzugsteuern und der Bescheinigung der Kapitalertrag-steuer,"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6-08-AbzStEntModG/0-Gesetz.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6-08-AbzStEntModG/0-Gesetz.html), 검색일자: 2021. 6. 21.

22) 제한납세의무자(beschr nkt Steuerpflichtige)가 국내에서 기술적 특허 및 로열티, 저작권, 문화체육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규정함

23) 2021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8억 7천만원임

24) 2021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억 8천만원임



■ 연방국회 재정위원회의 수정을 거친 최종 법안에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본소득세 의무전자 신고 항목 확대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관련 추가 규정이 포함됨

- 「소득세법」 제45b~c조를 수정하여 제한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무제한 납세의무자에게도 자본소득세 신고 시 입증되지 않은 자본소득세에 대한 정보, 면제된 세금공제액에 대한 정보, 세금공제를 위한 통합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45a조 제7항에 자본소득세 원천공제 확인서 발급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소득세법」 제50c조를 신설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선택적 약식 원천징수 절차(Kontrollmeldeverfahren) 삭제, 면세확인서(Freistellungsbescheinigung) 발급 후 세금신고 내용 변경 또는 면세액 환급의 양자택일 규정 삭제, 제한 납세의무자가 설립한 투자펀드에 대한 지불청구자가 면세액을 환급받을 때 추가로 존재하던 절차를 삭제함

■ 또한 이전가격규제 보안을 위한 「기업전환세법(UmwStG)」 개정이 포함됨

- 「국제조세법(AStG)」 제1-1a조 “이전가격(Verrechnungspreise)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업전환세법(UmwStG)」에 제2조 제5항 “이전가격을 통한 손실상쇄 금지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진수 연구원>

### [스위스 - 의무 건강보험료 직접세 공제 한도 인상안 제출]

- 스위스 연방내각은 2021년 6월 11일, 연방의회에서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인상된 의무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연방직접세<sup>25)</sup>에서 의무 건강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의 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함<sup>26)</sup>
- 부부는 기존 3,500프랑<sup>27)</sup>에서 6천프랑<sup>28)</sup>까지, 그 외 납세자는 기존 1,700프랑<sup>29)</sup>에서 3천프랑<sup>30)</sup>까지, 어린이와 간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한도액이 기존 700프랑<sup>31)</sup>에서 1,200프랑<sup>32)</sup>으로 인상됨
- 동시에 기존에 존재하던 의무 가입금액을 넘어서는 추가 건강보험 또는 생명보험 상품이나 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함

25) 스위스의 의무 건강보험료는 연방직접세인 소득세에서 원천납부됨

26) 스위스 연방재무부, “Abzug für die Krankenkassenprämien soll erhöht werden,” [https://www.efd.admin.ch/efd/de/home/das-efd/nsb-news\\_list.msg-id-83929.html](https://www.efd.admin.ch/efd/de/home/das-efd/nsb-news_list.msg-id-83929.html), 검색일자: 2021. 6. 21.

27)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0만원임

28)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0만원임

29)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9만원임

30)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9만원임

31)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만원임

32)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8만원임

- 해당 조치를 통해 스위스 연방직접세 세수는 연간 2억 9천만프링<sup>33)</su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자료수집 및 조사: 박진수 연구원>

### [이탈리아 -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 조치 법률 제정 및 관보 게재 등]

- 이탈리아 의회는 2021년 5월 21일, 법령 제 41/2021호를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세제 조치를 법률로 제정함<sup>34)</sup>
  - 법령 제41/2021호의 기존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과 일정 조건 납세자의 가산세 취소 조치 등임
    - 해당 법령은 2021년 5월 21일 법률 제69/2021호 (Law No. 69 of 21 May 2021)로 전환됨
- 새롭게 추가된 세제 지원 조치는 특정 사업용 자산 장부가액 상향, 문화예술기업의 세액공제혜택 도입, 면세 가능 현물급여 기준 상향 및 부동산 지방세 분납 취소 등이 있음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진행 중인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특정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회계 목적으로 상향하는 자산 재평가는 2021년 관련 재무제표에 자격 있는 기업에 의해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일정한 제한을 받음<sup>35)</sup>
  -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토지, 특정 부동산, 설비, 특허, 상표,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 등임<sup>36)</sup>
  - 자격 있는 기업이란, 이탈리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ITA GAAP)을 채택한 이탈리아 기업과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는 기업을 의미함<sup>37)</sup>
-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연극 및 라이브 공연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업활동과 공연 및 이들의 디지털 방식 등의 수행을 위해 2020년에 발생한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21 회계연도의 직원의 현물급여는 516.46유로 (기존 258.23유로)<sup>38)</sup>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됨
- 기업이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2021년 만기 부동산(Imposta Municipale Propria: IMP)에 대한 지방세 1차 분납은, 2019년 대비 2020년 최소 30%의 매출 감소를 겪는다면 취소됨

33)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71억원임

34) IBFD, "COVID-19 Pandemic: Parliament Enacts Further Support Measures," 2021. 6.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4\\_it\\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4_it_1.html), 검색일자: 2021. 6. 15.

35)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로 자산의 가치가 증대된 경우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흑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 조세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고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증자 재원이 발생해 주주이익이 확보됨(시사경제용어사전, 「자산재평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761&cid=43665&categoryId=43665>, 검색일자: 2021. 7. 1.)

36) EY, "Italy extends accounting step-up election to financial year 2021," 2021. 5. 26., <https://taxnews.ey.com/news/2021-1080-italy-extends-accounting-step-up-election-to-financial-year-2021>, 검색일자: 2021. 7. 1.

37) EY, "Italy extends accounting step-up election to financial year 2021," 2021. 5. 26., <https://taxnews.ey.com/news/2021-1080-italy-extends-accounting-step-up-election-to-financial-year-2021>, 검색일자: 2021. 7. 1.

38) 2021년 6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70만원, 약 35만원임



■ 이탈리아는 또한 2021년 5월 25일, 법령 제 73/2021호를 통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세제 조치를 관보에 게재함<sup>39)</sup>

■ 관보의 주요 세제 조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에 대한 세금의 시행시기 연기 조치와 명목이자비용공제(ACE)<sup>40)</sup>의 제공 및 기타 세제 지원의 연장 등이 있음

● 적격기업은 2020년 12월 31일의 회계 순 자본 대비 2021년 순 자본의 15%에 해당하는 명목이자율을 공제하는 강화된 명목이자비용공제(ACE)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명목이자비용공제(ACE)란, 기업이 순 자본에서 명목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비용만큼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뜻하며, 이탈리아의 명목이자율은 2019 회계연도 기준 1.3%임<sup>41)</sup>

- 강화된 ACE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순 자본의 최대 범위는 기업당 500만유로이며, 이에 따라 15%가 적용된 최대 75만유로가 공제 대상임<sup>42)</sup>

-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순 자본 상승은 일반적인 ACE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주자로서 기업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

장기여금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 모든 유형의 세금에 대해 사용 가능한 ACE 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음

- 세액공제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반환할 수도 있음

● 적격기업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적격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의 60%(복잡한 서비스 계약이나 임대계약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대상 기업은 2019 회계연도에 수익이 1,500만유로<sup>43)</sup> 이하였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비해 월 평균 매출액이 최소 30%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적격기업도 2019년 같은 달에 비해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개보수 및 접근성 증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2 회계연도로 확대함

● 섬유·패션·신발·피혁 업종에 종사하는 적격기업은 회계연도 말 재고금액과 이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재고금액의 차액 30%에 해당하는 세액

39) IBFD, "COVID-19 Pandemic: Italy Gazettes Further Support Measures," 2021. 6.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11\\_it\\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11_it_1.html), 검색일자: 2021. 6. 15.

40) 영어로는 'notional interest deduction'이며 이탈리아어로 'aiuto alla crescita Economica'로 쓰임

41) 딜로이트, "Law decree provides significant enhancements to notional interest deduction regime," 2021. 6. 3., <https://www.taxathand.com/article/18715/Italy/2021/Law-decree-provides-significant-enhancements-to-notional-interest-deduction-regime>, 검색일자: 2021. 7. 1.

42) 2021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67억 7,500만원, 약 10억 1,625만원임

43) 2021년 6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3억 670만원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적격기업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백신을 포함한 혁신 의약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액은 각 수혜기업에 대해 연간 최대 2천만유로<sup>44)</sup>까지 가능함
- 개인이 혁신창업기업 및 중소기업(SMEs)의 적격 지분 매각을 통해 실현한 시세차익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됨
  - 공제 대상 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자본청약을 통해 취득되며 최소 3년간 보유된 것에 한함
  -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자본청약을 통해 혁신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시세차익을 1년 이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거주기업과 비거주기업에 대한 적격 지분 매각에 대해 개인이 실현하는 자본이익은 개별소득세를 면제함
- 과세 대상자는 파산 또는 채무불능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게 고객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대손상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 2021 회계연도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200만유로(이전에는 70만유로)<sup>45)</sup>까지 세액공제액이 확대됨

- 35세 이하 개인에게 최초 주거지로 적격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주택담보세, 지적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플라스틱세 시행시기가 2022년 1월 1일(이전에는 2021년 7월 1일)로 연기됨
-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전에는 2021년 4월 30일) 만료되는 과세관청의 지급명령에 따른 세금납부 기한이 일시 정지되었으며, 세금납부는 2021년 8월 2일(이전에는 2021년 5월 31일)까지 단일 분할 상환으로 이행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 [이탈리아 - 설탕세 시행 규칙 발표]

- 이탈리아 정부는 2021년 5월 27일, 2020년 예산법에 도입된 가당음료(설탕세)에 대한 세율 시행 규칙을 관보 제125호로 발표함<sup>46), 47)</sup>
  - 설탕세는 당 함유 음료 및 농도 1.2% 이하의 알코올 음료의 완제품 및 희석제품에 적용되며 1L당 각각 0.1유로, 0.25유로가 부과됨<sup>48)</sup>
    - 부과 대상 음료범위는 HS code 2009호의 과일, 채소 및 콩과의 야채주스, 2202호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나 향료가 첨가된 물 및 비알코올음료임

44) 2021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0억 9,620만원임

45) 2021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27억 1,096만원, 약 9억 4,883만원임

46) IBFD,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ssues Implementing Rules on Sugar Tax," 2021. 6.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1\\_it\\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1_it_1.html), 검색일자: 2021. 6. 15.

47) 이탈리아 관보, "Imposta di consumo sulle bevande edulcorate," 2021. 5. 27.,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gu/2021/05/27/125/sg/pdf>, 검색일자: 2021. 6. 15.

48) 2021년 6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135원, 약 338원임



- 해당 규칙은 가당음료 거래에 대한 적격한 설탕세 납부의무자, 설탕세 관련 등록 및 환급 절차 등 기타 적용 가능한 행정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이탈리아에서 제조업체가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가당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그 제조업체가 설탕세를 납부해야 함
- 이탈리아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생산한 가당음료의 경우, 제3자가 이탈리아에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가당음료를 판매했다면 그 제3자가 설탕세를 납부해야 함
- EU 회원국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 및 수출에 대한 설탕세는 면제됨

■ 이탈리아 설탕세는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포르투갈 - 코로나19 관련 소비촉진 프로그램 발표]**

- 포르투갈 재무부 장관은 2021년 6월 7일, 2021년 예산법에 도입된 IVAucher 활용방법을 조례 제 119/2021호로 발표함<sup>49), 50)</sup>
- IVAucher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산업에서의 소비촉진을 위한 임시 프로그램임

**<표 1> IVAucher 활용방법**

구분	기간	활용방법
1단계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 소비자가 해당 기간 동안 숙박, 문화 및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무당국 웹 사이트를 통해 신고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평가
2단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 1단계에서 평가된 혜택을 사용

출처: IBFD, "Government Announces Deadlines for 'IVAucher' Programme," 2021. 6.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8\\_pt\\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8_pt_1.html), 검색일자: 2021. 6. 15.

- 소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숙박, 문화 및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누적하고, 향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누적된 금액을 쿠폰(voucher)처럼 사용할 수 있음
-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덴마크 - EU 권고사항을 반영한 CFC Rule 개정안 관보 게재]**

- 덴마크 정부는 2021년 6월 3일, EU의 조세회피 방지 지침(EU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 제7조 및 제8조의 이행을 위한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6월 9일 해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sup>51)</sup>

49) IBFD, "Government Announces Deadlines for 'IVAucher' Programme," 2021. 6.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8\\_pt\\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8_pt_1.html), 검색일자: 2021. 6. 15.  
 50) 포르투갈 재무부, "Portaria n.º 119/2021," 2021. 6. 7., <https://dre.pt/application/conteudo/164712120>, 검색일자: 2021. 6. 15.  
 51) IBFD, "Denmark Adopts Changes to CFC Legislation," 2021. 6.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4\\_d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4_dk_1.html), 검색일자: 2021. 6. 17.

- 제7조는 특정 외국법인 과세제도(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up>52)</sup> 적용 대상 외국법인에 대한 규칙이며, 제8조는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Computation of controlled foreign company income)에 대한 규칙임<sup>53)</sup>
- 기존에 존재하던 CFC 제도를 기반으로, 다음의 사항을 추가함
  - 외국 자회사가 금융회사인 경우 배당금, 이자, 로열티 같은 수동소득이 총소득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CFC Rule이 적용됨<sup>54)</sup>
  - CFC 적용 대상에는 법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함
    - 즉, 덴마크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 및 지분율에 관계없이 경제적·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자회사를 포함함
  - CFC 수입의 정의에는 지식재산권(IP) 등의 기타 수입이 포함되며,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분 실체 검사(Partial substance test)를 거쳐 CFC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sup>55)</sup>
    - 외국 자회사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중요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과거에 수행했어야 함
    - 외국 자회사는 덴마크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세 목적상 거주해야 함
    - 덴마크 모회사는 해당 외국 자회사와 관련하
- 여 실체 테스트를 사용해야 함을 세무 당국에 통보하고 이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부분 실체 검사와 그 조건은 과도한 CFC 제도의 적용을 배제함과 동시에, 덴마크 과세 기반의 침식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모회사에 필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덴마크 세무당국의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함
- 채택된 법안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과세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싱가포르 -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발표 및 공개 협의 개시]**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1년 6월 11일, 2021년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협의를 개시함<sup>56)</sup>
- 「소득세법」 개정안 공개 협의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2021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함
  - 2021년 싱가포르 예산안에서 발표된 12개 개

52) CFC 제도는 저세를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함  
 53) European Union Anti-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 (ATAD), 2016.  
 54) 덴마크 법률 정보시스템, <https://www.retsinformation.dk/eli/ta/2021/1180>, 검색일자: 2021. 6. 17.  
 55) EY, <https://taxnews.ey.com/news/2021-0841-danish-government-revises-proposed-cfc-legislation>, 검색일자: 2021. 6. 17.  
 56) 싱가포르 재무부, "Public Consultation on Proposed Income Tax(Amendment) Bill 2021," 2021. 6. 11., [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ublic-consultations/public-consultation-on-proposed-income-tax-\(amendment\)-bill-2021](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ublic-consultations/public-consultation-on-proposed-income-tax-(amendment)-bill-2021), 검색일자: 2021. 6. 21.



정안과 싱가포르 「소득세법」 정기검토에서 제안된 24개 개정안이 공개 협의 대상임

- 공개 협의기간 종료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임

■ 발표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조치, 외국인 투자정책 등이 주요 공개 협의 대상임<sup>57)</sup>

- 코로나19 피해 지원 조치에는 ① 적격 결손금 소급공제(Loss Carry-Back) ② 적격 시설 및 기계장치(Plant and Machinery: P&M) 취득에 따른 자본 지출액 가속공제 ③ 특정보수비용(Renovation and Refurbishment: R&R)<sup>58)</sup> 특별공제 ④ 적격 기부금 세액공제<sup>59)</sup> 등의 적용기간 연장이 포함됨
- 외국인 투자정책과 관련된 개정안에는 ① 국제화를 위한 이중세액공제(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DTDi)<sup>60)</sup>의 조건 변경, ② 이중세액공제(Double Tax Relief: DTR)<sup>61)</sup> 제도의 적용기간 연장, ③ 금융·재무 센터 특례제도(Fiance & Treasury Centre Incentive: FTC)<sup>62)</sup>의 적용기간 연장, ④ 적격 비영리기구

(Non-for-Profit Organization: NPO) 면세혜택 적용기간 연장 등이 포함됨

- 국제화를 위한 이중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싱가포르 기업청에 이중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음
- 개정안에는 싱가포르 기업청의 승인 없이도 해외시장 진출 및 개발활동과 관련한 적격활동 지출액을 최대 15만싱가포르달러<sup>63)</sup> 한도로 세액공제 청구가 가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치울 연구원>

[호주 - 재무부 2021/22 예산안 제출]

- 호주 재무부는 2021/22 예산안을 2021년 5월 11일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법인세제, 소득세제와 관련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법인세에 대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 즉시상각 확대 조치 한시 연장,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연장,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 적용 허용 등 조세지원 조치를 뒀<sup>64)</sup>

57) IBFD, "Singapore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Proposed Amendments to Income Tax Act," 2021. 6.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16\\_sg\\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16_sg_1.html), 검색일자: 2021. 6. 21.

58) 특정보수비용이란, 전기 공급을 위한 배선 및 일반적인 전력용품 설치, 조명, 운수, 냉수 시스템 설치, 가스시스템, 주방용품, 화장실 설치 등 일반적으로 건물 구조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보수비용을 말함

59) 적격 기부금 세액공제란, 싱가포르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Institutions of a Public Character: IPCs) 및 기타 자격 있는 수혜자에 대한 적격 기부금을 최대 2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60) 국제화를 위한 이중세액공제란,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해외시장 진출 및 개발활동과 관련한 적격활동 지출액에 대하여 최대 2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61) 이중세액공제란, 국가 간 상호 이중과세회피 협정을 통해 상대방 국가에서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62) 금융·재무 센터 특례제도란, 싱가포르에 금융재무 센터를 설립한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외 은행 및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63)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652만원임

- 특허박스 제도를 2022년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의학·바이오 특허기술권에서 창출된 소득을 17%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기로 함<sup>65)</sup>
  - 호주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30%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함
- 특정 기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한도금액 한시 인상 조치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기로 함<sup>66)</sup>
- 법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한시 조치 적용기간을 2022/23 회계연도까지로 1년간 연장하기로 함<sup>67), 68)</sup>
- 2023년 7월 1일부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법정내용연수 외에 납세자의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감가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은 특허권, 저작권,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등임

중·저소득층 세액공제제도 연장 적용 등 조세지원 조치를 돕<sup>69)</sup>

- 납세자의 업무 관련 교육비(self-education deductions)는 현재 250호주달러<sup>70)</sup> 초과분부터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제한을 없앨 예정임
  - 동 개정안은 의회 승인일 이후에 개시되는 소득연도(after the date of assent to the enabling legislation)부터 유효함
- 중·저소득층 세액공제(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를 2020/21 과세연도에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원책으로 2021/22 소득연도에도 연장 적용하도록 함<sup>71)</sup>
  - 동 제도는 2018년에 한시 조치로 도입되었으며 연간 과세소득이 12만 6천호주달러 이하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1인당 공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255-1,080호주달러임<sup>72)</sup>

■ 소득세에 대해 교육비 소득공제 제외금액 삭제,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서현 연구원>

64) IBFD, "Australia Delivers Budget for 2021/22," 2021. 5.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12\\_au\\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12_au_1.html), 검색일자: 2021. 6. 14.

65) 호주 재무부, "Tax incentives to support the recovery," [https://budget.gov.au/2021-22/content/factsheets/download/factsheet\\_tax.pdf](https://budget.gov.au/2021-22/content/factsheets/download/factsheet_tax.pdf), 검색일자: 2021. 7. 1.

66) 동 조치는 2020/21 예산안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1/22 예산안은 제도 세부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적용시기만을 1년 연장했음. 세부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6월호: 10월호, 2020을 참조

67) 동 조치는 2020/21 예산안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1/22 예산안은 제도 세부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적용시기만을 1년 연장했음. 세부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0월호, 2020을 참조

68) 2021/22 과세연도의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은 3년임(호주 국세청, "Loss carry back tax offset," <https://www.ato.gov.au/Business/Loss-carry-back-tax-offset/>, 검색일자: 2021. 6. 14.)

69) IBFD, "Australia Delivers Budget for 2021/22," 2021. 5.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12\\_au\\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12_au_1.html), 검색일자: 2021. 6. 14.

70) 2021. 6. 1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만 4천원임

71) 호주 국세청, "Low and middle income earner tax offsets,"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Offsets-and-rebates/Low-and-middle-income-earner-tax-offsets/>, 검색일자: 2021. 6. 14.

72) 2021년 6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연간 과세소득이 약 1억 845만원(12만 6천호주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약 22만-93만원(255-1,080호주달러)을 세액공제하는 것임



### [뉴질랜드 - 최저생계보장세액공제 기준금액 인상]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21년 5월 21일 최저생계보장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2021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함<sup>73)</sup>
  - 최저생계보장세액공제(minimum family tax credit)는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기준 금액만큼의 세후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임
  - 기준금액(세후 소득 보장금액)은 기존 3만 576뉴질랜드달러에서 3만 1,096뉴질랜드달러로 520뉴질랜드달러만큼 인상됨<sup>74)</sup>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서현 연구원>

### [뉴질랜드 -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범위 발표]

-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6월 10일, 올해 10월 도입 예정인 주거용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비용 소득 공제 부인·허용 범위를 발표함<sup>75)</sup>
  - 처음 개정안을 발표한 3월 당시에는 신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배제하는지가 미정이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신축 및 예외적인 주거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계속 허용하는 방침을 확정함

- 신축 주거용부동산이란, 설립·추가 설립·대체·증축을 통해 기존에 없던 주택이 새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sup>76), 77)</sup>
  - 공터(bare land)에 주택을 새로 설립한 경우: 해당 용지에서 건설되었는지는 불문하므로 조립식 주택을 해당 주거용지에 설치한 경우도 포함함
  - 기존 주택을 해체(removed or demolished)하고 새로운 주택(또는 복수의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대체한 새로운 주택이 1세대용인지, 다세대용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건축 준공 허가를 받았다면 이를 불문하고 새로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에 주택을 추가 설립한 경우: 독립시설(stand-alone)인지 부수시설(attached)인지를 불문함
  - 기존 주택을 증축하여 2개 이상의 주택을 만든 경우

73) 뉴질랜드 재무부, "MFTC threshold increased," <https://taxpolicy.ird.govt.nz/news/2021/2021-05-21-mftc-threshold-increased>, 검색일자: 2021. 6. 14.

74) 2021년 6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기존 약 2,441만 5천원(3만 576뉴질랜드달러)에서 약 41만 5천원(520만뉴질랜드달러) 인상되어 2,483만원(3만 1,096뉴질랜드달러)이 된 것임

75)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4월호, 2021을 참조

76) 뉴질랜드 정부, "The treatment of new builds under the bright-line test and changes to interest deductibility," <https://taxpolicy.ird.govt.nz/-/media/project/ir/tp/publications/2021/2021-summary-sheets-interest-limitation-and-bright-line-Rules/2021-summary-sheet-new-builds.pdf>, 검색일자: 2021. 6. 14.

77) 뉴질랜드 정부, "Design of the interest limitation Rule and additional bright-line Rules," <https://taxpolicy.ird.govt.nz/-/media/project/ir/tp/publications/2021/2021-dd-interest-limitation-and-bright-line-Rules/2021-dd-interest-limitation-and-bright-line-Rules-pdf.pdf?modified=20210610001658>, 검색일자: 2021. 6. 25.

- 오피스 빌딩과 같은 상업시설을 아파트 등의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예외적인 주거용부동산은 상업용 숙박시설, 소유주가 거주하며 임대하는 주거용부동산 등 열거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의미함<sup>78)</sup>

- 호텔·모텔 등과 같은 상업용 숙박시설
-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운영하는 하숙시설(Bed&Breakfasts), 소득 창출 용도로 일부가 사용되는 소유주의 주된 주택(다세대 주택(Flat-rental) 임대와 같은 경우)
- 병원·요양원·노시홈·호스피스 같은 돌봄 시설
- 은퇴자 마을(Retirement villages), 농지에 있는 주택(Houses on farmland)
- 종업원용 숙소, 학생용 숙소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서현 연구원>

[EU - 유럽 의회, 재정 프로그램 법안 최종 승인]

■ 유럽의회는 2021년 5월 20일, 조세 분야 협력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Fiscalis programme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2021-2027) 법안을 최종 승인함<sup>79)</sup>

- 법안은 2021년 5월 28일부터 발효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 본 프로그램은 EU 회원국 간의 IT 조세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EU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 동안 2억 6,900만유로<sup>80)</sup>의 예산이 책정됨

- 회원국들의 세무당국 간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으로, 이를 위하여 ① EU 회원국들 간에 더욱 연결된 IT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②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③ 위험 관리 및 감사에 관한 공동 조치를 시행하고, ④ 혁신 및 새로운 경제모델 시행을 통한 EU 경쟁력을 강화함
- 프로그램 예산의 70% 이상은 조세포탈의 방지를 위하여 EU 회원국들의 세무당국 간 정보 교환에 필수적인 IT 시스템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sup>81)</sup>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78) 뉴질랜드 정부, "What types of properties are affected by the changes to interest deductibility?," <https://taxpolicy.ird.govt.nz/-/media/project/ir/tp/publications/2021/2021-summary-sheets-interest-limitation-and-bright-line-Rules/2021-summary-sheet-affected-properties.pdf>, 검색일자: 2021. 6. 14.

79) IBFD,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Agreement Reached on Fiscalis Programme 2021-2027," 2021. 5.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25\\_e2\\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25_e2_2.html), 검색일자: 2021. 6. 14.; 유럽 집행위원회, "Fiscalis 2021-2027,"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fiscalis-2021-2027\\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fiscalis-2021-2027_en), 검색일자: 2021. 6. 14.

80) 2021년 7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06억원임

81) 유럽 집행위원회, "EU financial programme worth €270 million to support Member State tax authorities enters into force," 2021. 5. 28.,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eu-financial-programme-worth-%E2%82%AC270-million-support-member-state-tax-authorities-enters-force\\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eu-financial-programme-worth-%E2%82%AC270-million-support-member-state-tax-authorities-enters-force_en), 검색일자: 2021. 6. 14.



### [EU - 유럽 집행위원회, 새로운 조세정책 제안]

- 2021년 5월 18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21세기 기업 과세에 관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on Business Taxation for the 21st century)을 발간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 지원 및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를 촉진하기 위한 장·단기 비전을 제시함<sup>82)</sup>
- 2023년까지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을 위한 단일 법인세 규정집인 『유럽 비즈니스: 소득세 프레임워크(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 이하 BEFIT)』를 발표함
  - BEFIT는 세무 행정 부담을 줄이며, 회원국 간의 과세권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고, 조세회피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집행위원회는 공정한 조세체계를 위한 향후 2년 동안의 의제를 발표함
  - 중소기업의 국내 손실 처리에 대한 권고안 (Recommendation on the domestic treatment

of losses)을 채택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시점에 이익을 보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에 대한 2020~2021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2022년 1분기까지 부채-자본 편향 감소 공제 (Debt Equity Bias Reduction Allowance: DEBRA) 입법안을 제안함
    - 현 「법인세법」하에서는 부채 조달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고, 자본 조달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음
    -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가 부채 조달을 더욱 부추겨 기업의 파산 위험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위의 입법안을 추진하고자 함
  - 2022년까지 EU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공표를 위한 입법을 제안함
  - 2021년 4분기까지 새로운 조세회피방지지침 (ATAD 3)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체가 없는 EU 내 페이퍼컴퍼니가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82) 유럽 집행위원회, “Future-proof taxation – Commission proposes new, ambitious business tax agenda,” 2021. 5. 18.,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future-proof-taxation-%E2%80%93-commission-proposes-new-ambitious-business-tax-agenda\\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future-proof-taxation-%E2%80%93-commission-proposes-new-ambitious-business-tax-agenda_en), 검색일자: 2021. 6. 14.; 유럽 집행위원회,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 Business Taxation for the 21st Century,” 2021. 5. 18.,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default/files/communication\\_on\\_business\\_taxation\\_for\\_the\\_21st\\_century.pdf](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default/files/communication_on_business_taxation_for_the_21st_century.pdf), 검색일자: 2021. 6. 14.; 유럽 집행위원회, “Communication on Business Taxation for the 21st Century,”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unication-business-taxation-21st-century\\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unication-business-taxation-21st-century_en), 검색일자: 2021. 6. 18.; IBFD, “European Commission Presents ATAD 3, EU Single Corporate Tax Rulebook and Business Tax Agenda for Next Years,” 2021. 5.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19\\_e2\\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19_e2_1.html), 검색일자: 2021. 6. 28.

## 주요국의 재정동향



### ■ EU 집행위, 재정정책 권고 European Semester\*

봄 패키지 발표(2021. 6. 2)<sup>1)</sup>

\* European Semester는 유럽연합에서 전체적인 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EU 회원국들의 경제·재정 계획을 논의하고, 연간 주기로 진척 정도를 감독함

- (목적) 회원국들이 경제 회복을 강화하여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sup>2)</sup>의 핵심 프로그램인 회복·복구수단<sup>3)</sup>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재정기조 및 일반면책조항 적용) EU 회원국은 2021년과 2022년 재정 완화를 유지하고, 회복·복구수단의 자금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투자 및 개혁을 이행해야 함
  - (재정정책) 재정지원의 이른 철회를 경계해야 하며, 보건 관련 위험이 감소하면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강화하는 목표 지향적 조치(targeted measure)로 전환해야 함

- (회복·복구수단) 자금지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회복·복구수단의 투자와 개혁을 이행하면 경제 회복, 잠재 성장과 고용 개선, 불균형(imbalance)을 줄이고, 공공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일반면책조항) 안정성장협약<sup>4)</sup>의 재정준칙 준수 의무에서 예외적인 이탈을 용인하는 일반면책조항을 적용 중이며, 유로지역은 2022년 1분기에 위기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sup>5)</sup>에 따라 2023년부터 준칙 준수 의무를 적용할 예정
- 2020년 3월 안정성장협약의 재정준칙 준수 의무에서 이탈을 용인하는 일반면책조항이 적용되면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긴급 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다고 평가
- (재정준칙) 일반면책조항 적용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초과적자시정절차<sup>6)</sup>를 즉시 적

1)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 Paving the way for a strong and sustainable recovery," 2021. 6. 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2722](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2722), 검색일자: 2021. 6. 3.

2) 2020년 5월 27일 발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EU 차원의 복구 전략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500억유로(2018년 가격 기준) 규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pp. 45-47 참고(<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serialNo=5266>)

3)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인 Next Generation EU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6,725억유로 규모 자금을 회원국에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함.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대비하도록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pp. 66-67 참고(<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441>)

4)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은 EU 국가들이 건전 재정을 추구하고 재정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①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거나 ② 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서 충분한 속도로 채무를 감축하지 않는 경우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초과적자시정절차(EDP)가 개시될 수 있음. 또한 중기재정목표(MTO)를 위반(구조적 재정수지 목표와 지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규정된 절차를 거쳐 심각한 위반 시정절차(SDP)를 개시할 수 있음

5) 집행위의 2021년 봄 경제전망을 고려



용하지는 않으나, 재정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있음

- EU 회원국이 적자 및 채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3개 회원국이 적자 기준을 준수하고, 채무 기준은 13개 국가에서 지켜지지 않았으나, 현 단계에서 초과적자시정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함<sup>7)</sup>

- 적자 기준을 준수한 국가들은 불가리아, 덴마크, 스웨덴임
- 채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3개 회원국들은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핀란드임

- (거시경제 불균형) 2021년 경고체계 보고서(2020년 11월)<sup>8)</sup>에서 심층검토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들이 여전히 거시경제 불균형(imbalance)<sup>9)</sup> 상태이나, 회복·복구수단에 따른 개혁과 투자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3개 국가(키프로스, 그리스, 이탈리아)는 여전히

히 과도한 불균형

- 9개 국가(크로아티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는 불균형 상황

● 강화된 감독 보고서와 사후 감독 보고서

- (강화된 감독 보고서 - 그리스<sup>10)</sup>) 집행위는 그리스에 대한 10번째 강화된 감독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 정부가 구체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

- (사후 감독 보고서<sup>11)</sup>) 4개국(아일랜드, 스페인, 키프로스, 포르투갈)에 대한 사후 감독 보고서에서 각 회원국의 상황 능력이 건전하다고 결론을 지음

■ EU 집행위, 2022년 EU 예산안 발표(2021. 6. 8.)<sup>12)</sup>

- (방향) 2022년 EU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촉진하고, 유럽을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끌며, 일자리 창출 및 보호를 목표로 함

6)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는 안정성장협약의 교정적 조치(corrective arm)로 재정수지 기준(GDP 대비 3%) 또는 채무 기준(GDP 대비 60%)을 위반한 국가에 적용함. 초과적자시정절차 진행은 집행위에서 위반 사항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사회는 이를 기초로 기준 위반 여부를 결정하며, 위반 시 권고와 함께 시정기한을 부과함. 부과한 기한 내에 초과적자를 시정해야 하며, 권고를 불이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금전적 제재 등의 조치를 발동함

7) 루마니아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초과적자로 인한 교정적 조치를 진행 중이며, 집행위는 루마니아에 2024년을 목표로 초과적자를 시정하는 재정조정 경로의 갱신을 권고함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pp. 53-60 참조(<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441>)

9) 불균형은 경상수지, 일반정부 채무, 실업률 등 14개의 주요 지표와 추가 보조 지표들을 기초로 평가

10) 2018년 그리스에 대한 유럽안정기금(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지원을 종료하면서 ESM 프로그램에 따른 주요 개혁의 실행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감독을 유지하고 있음

11) EU 회원국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후 재정지원의 최소 75%가 상환될 때까지 사후 감독 보고서를 통한 감독을 받아야 함

12) EU 집행위, "EU budget 2022: Speeding up Europe's recovery and progressing towards a green, digital and resilient future," 2021. 6. 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2878](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2878); EU 집행위, "Questions and answers: Draft annual budget 2022," 2021. 6. 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2879](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2879); EU 집행위, "Statement of estimates 2022," 2021. 6. 8.,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about\\_the\\_european\\_commission/eu\\_budget/db2022\\_statement\\_of\\_estimates\\_2022-web.pdf](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about_the_european_commission/eu_budget/db2022_statement_of_estimates_2022-web.pdf)

<표 1> 2022년 EU 예산안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승인기준			지급기준	
	금액	전년 대비 변화율	Next Generation EU	금액	전년 대비 변화율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644	4.0	3,594	21,729	26.4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56,098	5.7	-	62,219	-6.8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49,706	3.1	10,824	56,349	-8.9
2.b. 회복력 및 가치	6,392	30.8	119,071	5,869	30.6
3. 천연자원 및 환경	56,097	-4.2	10,012	56,508	-0.5
4. 이주 및 국경관리	3,124	37.1	-	3,121	16.2
5. 안보 및 국방	1,785	4.4	-	1,237	84.6
6. 파트너 및 세계	16,698	3.7	-	12,407	14.8
7. 유럽 공공 행정	10,845	3.9	-	10,845	3.8
기타 특수 기금	1,500	-74	-	1,323	-76.3
합계 (EU-27 GNI 대비 %)	167,793 (1.12)	2.0	143,502	169,391 (1.14)	1.9

출처: EU 집행위, "Statement of estimates 2022," 2021. 6. 8., 2.2. Overview of the 2022 draft budget,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about\\_the\\_european\\_commission/eu\\_budget/db2022\\_statement\\_of\\_estimates\\_2022-web.pdf](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about_the_european_commission/eu_budget/db2022_statement_of_estimates_2022-web.pdf)

- 2022년 EU 예산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인 차세대 EU를 통합하여 3,110억유로를 지원하여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며, 강력하고 탄력적인 유럽연합을 만들고자 함
- 이와 더불어 유럽 녹색협약 등 유럽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계속 지원할 예정
  -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이 EU가 추구하는 6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 - ① 유럽 녹색협약, ②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③ 모두를 위한 경제, ④ 유럽식 생활방식의 증진, ⑤ 세계

속에 강한 유럽, ⑥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구성

- (규모) 2022년도 EU 예산안에서 승인기준 예산은 1,678억유로, 지급기준 예산은 1,694억유로를 편성<sup>13)</sup>(<표 1> 참조)
  - 이는 EU 27개국 GNI 대비 각각 1.12%, 1.1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전년 대비 증가율(지급기준)은 안보 및 국방 84.6%, 회복력 및 가치 분야가 30.6% 로 높게 나타남
- 주요 내용
  - (코로나19 대응) 차세대 EU(Next Generation

13)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에 따라 승인된 해 혹은 향후에 쓰일 수 있는 금액을 의미.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



- EU) 1,184억유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
- (농·어업 지원)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530억유로, 유럽해양수산양식기금 9억 7,200만유로를 지원하여 농·어업민과 농업 및 수산업 분야를 강화하며, 유럽 농업개발기금<sup>14)</sup>은 차세대 EU에서 57억유로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역 개발) 지역 개발 및 통합을 위해 365억 유로를 지원하고, 위기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EU에서 108억유로 지원
- (국제 협력) 유럽의 파트너와 국제 협력 지원을 위해 148억유로를 배정
- (연구 및 혁신) 131억유로를 지원하고 그중 122억유로는 대표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을 지원하며, 차세대 EU에서 18억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
- (유럽전략투자) 55억유로를 유럽전략투자에 편성하고 그중 12억유로는 InvestEU<sup>15)</sup>를 지원하며, 28억유로는 유럽연결시설<sup>16)</sup>에 투자하고,

- 디지털 미래 지원에 12억유로 편성
- (사람·연대 강화) 사람과 사회적 결속력, 가치에 대한 투자로 179억유로를 지원
  - 이 중 133억유로는 고용·기술·사회적 통합을 위한 유럽사회기금 플러스에 지원하고, 교육을 위한 Erasmus+에 34억유로, 예술가·창작자를 대상으로 4억 100만유로 등을 지원
- (향후 일정) 집행위가 이사회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사회와 의회(7월), 의회의 공식 입장 발표(가을)가 이뤄지며, 이사회와 의회의 입장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올해 늦가을(10월 26일~11월 15일, 21일간)에 열릴 예정
 

<자료 정리 및 작성: 강민채 선임연구원>



### IMF

- IMF, 국제기구들과 코로나19 종식 계획 공동 선언 (2021. 6. 1.)<sup>17)</sup>
- IMF는 지난 5월 발표한 제안<sup>18)</sup>을 바탕으로 세계

14)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EAFRD)

15) 연구 및 혁신,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보건 분야, 전략 기술 관련 프로그램

16) 유럽연결시설(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은 EU 회원국 간의 운송, 에너지,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물리적인 단일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함. EU의 에너지 부문 지원 중 하나로 2014~2020년 동안 에너지, 교통, 디지털 사회기반시설에 330억유로를 투자. 최신 제안서(2018. 6. 6.)에 따르면 2021~2027년 유럽연결기금 예산은 423억유로로 증가했으며(2014~2020년 예산 대비 47% 증가), 에너지 87억유로, 운송 306억유로, 디지털 30억유로를 투자(EU 집행위, [https://ec.europa.eu/energy/funding-and-contracts/eu-funding-possibilities-in-the-energy-sector\\_en#connecting-europe-facility-](https://ec.europa.eu/energy/funding-and-contracts/eu-funding-possibilities-in-the-energy-sector_en#connecting-europe-facility-))

17) IMF, "New \$50 Billion Health, Trade, and Finance Roadmap to End the Pandemic and Secure a Global Recovery," 2021. 6. 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6/01/pr21150-new-billion-health-trade-finance-roadmap-end-pandemic-secure-global-recovery>; IMF, "Introductory Remarks by IMF Managing Director Kristalina Georgieva at the Joint WHO-IMF-WTO-WBG," 2021. 6. 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6/01/sp060121-remarks-by-kristalina-georgieva-at-joint-who-imf-wto-wbg-press-conference>; IMF, "A New Commitment for Vaccine Equity and Defeating the Pandemic," 2021. 6. 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6/01/a-new-commitment-for-vaccine-equity-and-defeating-the-pandemic>

18)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2021을 참조

은행, WHO, WTO와 5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종식 로드맵을 선언

- 코로나19 대응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ACT-A)<sup>19)</sup> 등을 통한 보조금 350억달러와 정부 및 다자 개발 은행 등이 지원하는 150억달러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 전 세계적 백신접종 목표 달성, 하방 위험 대응, 백신 보급 확대 및 접종 증대 전략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진단시약·치료제·개인보호장비의 적절한 공급 조달,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원 수용량 확대 등 주체별 세부 조치들로 구성됨
- 이번 계획이 전염병 종식을 앞당기고 감염과 인명 피해를 줄이며 경제 회복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세계 생산량을 9조달러 추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

■ IMF, G7 정상회의의 성명 발표(2021. 6. 13.)<sup>20)</sup>

- IMF 총재는 G7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을 촉구
  - IMF 등이 발표한 코로나19 종식 계획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선진국의 백신 여유분을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내년까지 10억회분을 기부하겠다는 G7의 발표를 환영

- 지난 몇 주간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통해 보조금 목표액 350억달러 중 약 1/3이 확보된 점은 고무적이거나 나머지 자금을 계속 마련해야 함

- 또한,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위기가 남기는 상흔에 유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서는 생산성·성장 제고, 채무 과잉(debt overhang) 해결,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강화가 필수적임
  - 팬데믹 이후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G7이 강조한 기후변화 대응 등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청정,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려는 정상들의 의지를 환영
  - 공공재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입을 증대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G7의 글로벌 최소법인세에 대한 지지를 환영
- 끝으로, 특별인출권<sup>21)</sup> 6,500억달러 신규 배분<sup>22)</sup>에 대한 G7의 지원에 감사를 표함
  -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신규 배분은 팬데믹 종식과 더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정여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정상들이 취약국에 1천억달러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표명한 것과 관련해 IMF는 회원국들과 이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음

<자료 정리 및 작성: 장준희 선임연구원>

19)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국제공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우리 나라도 시장 주도국 지위로 참여.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개발 보급 촉진을 위한 국제적 촉진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참여」, 보도참고자료, 2020. 9. 10.

20) IMF, "IMF Managing Director Welcomes G7 Action to Help the World Exit the Pandemic Crisis," 2021. 6. 1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6/13/pr21173-imf-managing-director-welcomes-g7-action-to-help-the-world-exit-the-pandemic-crisis>

21) IMF의 준비자산이자 IMF 등 국제기구의 회계 단위로,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스텔링 통화로 구성됨. 국가별 배분액 대비 초과/미달 보유분에 이자/수수료를 부과

22) IMF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글로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인출권 신규 배분을 논의 중임.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3월호, 2021을 참조



OECD

■ 코로나19 관련 보고서(The rise in public debt caused by the COVID-19 crisis and the related challenges) 발표(2021. 5. 27.)<sup>23)</sup>

●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채무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국가별로 적절한 정책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12월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전체 국가의 2022년 말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20%p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추가 재정지원 조치의 필요성, 우발부채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실제 부채비율은 전망치보다 높을 수 있음

- 각 국가들은 공공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체계적인 채무관리가 필요

● 국가별 재량적 재정건전화( Premature fiscal consolidation)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OECD 국가에서 경험한 것처럼 경제성장률 억제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국가차입전망(Sovereign Borrowing Outlook) 보고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들이 단기차입에 의존할 경우 높은 채무자 위험 수반, 공공채무 증가로 인한 부채관리의 어려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상환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다자간 협력 및 조치가 필요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대비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sers) 기능이 약하고 재정여력이 부족하며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팬데믹 위기 이후 국가별 재정지원을 비교해보면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16.4%였던 것에 비해 신흥국가의 경우 GDP 대비 약 4%, 저소득 국가의 경우 GDP 대비 약 1.5% 수준이었음

● 코로나19 충격 이후 국내외 수요 감소, 외국인 투자 하락, 상품가격 변동, 정부 수입 감소 및 공공지출 요구 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 능력 또한 하락하였음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제적 조치가 시급히 필요

● G20 국가의 DSSI(the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조치로 73개 저소득 국가에 채무상환 지급을 중단하도록 허용<sup>24)</sup> 하였으며, G20 재무장관은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 해결을 위해 최근 6,500억달러 특별한 출권(Special Drawing Rights)에 동의함

● IMF 재해억제·부채경감기금(the 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을 통해 28개

23) OECD,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095\\_1095388-c81ladkfnx&title=The-rise-in-public-debt-caused-by-the-COVID-19-crisis-and-the-related-challenges&\\_ga=2.47896864.603117136.1623820779-1699559493.1623820779](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095_1095388-c81ladkfnx&title=The-rise-in-public-debt-caused-by-the-COVID-19-crisis-and-the-related-challenges&_ga=2.47896864.603117136.1623820779-1699559493.1623820779)

24) G20 국가들은 저소득 국가들(73개국)을 대상으로 2020년 5-12월 사이 양국 정부대출에 대한 채무상환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함

적격 회원국을 대상으로 채무 원리금 면제 (debt service relief)를 제공<sup>25)</sup>

■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발표(2021. 5. 31.)<sup>26), 27)</sup>

- (개요)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별·영역별 회복 양상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국제협력이 필요
  - 일부 국가들의 경우 백신보급 확대와 정책적 노력 등으로 인해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 조치 등으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국가도 있음
  - 영역별로 생산, 상품교역 및 투자부문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서비스 소비 및 고용 부문의 회복은 더딘 것으로 보임
- (세계 경제전망)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 5.8%, 2022년 4.4%로 전망되며, 2021년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 말까지 위기 이전 경제성장 전망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 2021년 가을까지 백신 도입 완료, 일부 국가들의 새로운 재정 조치로 단기적 수요

지원, 가계지출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등을 가 정하여 전망

- (신흥국) 코로나19 재확산, 백신접종 지연, 추가적 거시경제정책 지원 여력 감소 등으로 경제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주요국 경제전망) 국가별 정책지원 여력, 백신 보급 속도 등에 따라 경제 회복 속도가 상이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정책지원 및 백신접종 가속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021년 6.9%, 2022년 3.6%로 전망
  - (일본)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둔화되어 2021년 1사분기 GDP가 감소했으나 백신보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 회복되어 2021년 및 2022년 GDP 성장률은 각각 2.6%, 2.0%로 예상
  - (유로지역) 봉쇄 조치로 인해 민간소비 및 서비스 부문 활동이 억제되어 2021년 1사분기 GDP 성장률이 감소했으나 백신접종 진전 등으로 성장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 2022년 4.4%로 전망됨
  - (한국) 확장적 거시정책, 거리두기 점진적 완화, 보상적 소비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서비스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GDP 성장률은 2021년 3.8%, 2022년 2.8%로 전망

25) IMF는 2021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해역제·부채경감기금(CCRT)을 활용해 빈곤하고 취약한 28개 회원국에 향후 6개월 동안 IMF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함

26)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1 Issue 1: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2021.,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1/issue-1\\_edfbc02-en](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1/issue-1_edfbc02-en)

27) OECD는 일반적으로 3월과 9월에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5월과 11월에 정식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경제전망보고서는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재정동향」은 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 바람



<표 2> 세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3~2019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0 Q4	2021 Q4	2022 Q4
실질GDP 성장률 <sup>1)</sup>								
세계 <sup>2)</sup>	3.3	2.7	-3.5	5.8	4.4	-0.9	4.4	3.4
G20 <sup>2)</sup>	3.5	2.8	-3.1	6.3	4.7	-0.4	5.0	3.4
OECD <sup>2)</sup>	2.2	1.6	-4.8	5.3	3.8	-2.9	5.1	2.4
미국	2.5	2.2	-3.5	6.9	3.6	-2.4	7.4	1.5
유로 지역	1.8	1.3	-6.7	4.3	4.4	-4.7	4.6	2.9
일본	0.8	0.0	-4.7	2.6	2.0	-1.0	1.4	1.2
한국	-	2.0	-0.9	3.8	2.8	-	-	-
Non-OECD <sup>2)</sup>	4.3	3.7	-2.3	6.2	4.9	0.9	3.8	4.2
중국	6.8	6.0	2.3	8.5	5.8	5.7	5.9	5.2
인도 <sup>3)</sup>	6.8	4.0	-7.7	9.9	8.2	-	-	-
브라질	-0.3	1.4	-4.1	3.7	2.5	-	-	-
실업률 <sup>4)</sup>	6.5	5.4	7.1	6.5	6.0	6.9	6.4	5.7
인플레이션 <sup>1), 5)</sup>	1.7	1.9	1.5	2.7	2.4	1.4	3.1	2.4
재정수지 <sup>6)</sup>	-3.2	-3.1	-10.8	-10.7	-6.0	-	-	-
세계 실질 무역 성장률 <sup>1)</sup>	3.4	1.3	-8.5	8.2	5.8	-4.7	6.4	4.8

주: 1) % 변화

2)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GDP의 가중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ties)

3) 회계연도 기준

4) 노동인구 대비 %

5)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private consumption deflator)

6)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9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Table 1.1. 재구성

- 백신접종 속도, 무역 분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GDP 성장률은 2021년 8.5%, 2022년 5.8%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재정정책 긴축 전환 가능성, 기업부채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
- (브라질) 팬데믹 통제 및 백신접종 속도가 개선된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1년 3.7%, 2022년

2.5%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 전망) 노동시장 여건, 세계무역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은 2021년 6.5%로 국가별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노동시장 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물가) 인플레이션은 원유가격 상승, 팬데믹 위

- 기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통화정책 및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무역) 세계무역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상·하방 요인) 코로나 백신접종 속도, 가계저축률, 신흥국 관련 리스크 등이 위험요인으로 존재
  -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배포가 신속하게 진행 될 경우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백신 생산 및 배포 지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 가능
    - (상방 시나리오) 세계 GDP 성장률 2021년 6.5%, 2022년 5.7~6%로 전망
    - (하방 시나리오) 2021년 및 2022년 세계 GDP 성장률 각각 5%, 3%로 전망
  - (저축률) 2020년 크게 증가한 가계저축률은 2021년부터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신흥국 관련 리스크) 코로나19 관련 리스크, 선진국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및 부채 증가로 인한 채무 불이행, 파산 등 금융 리스크 또한 상존
    - 선진국의 경제성장 확대 및 수요회복 등에 따른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 신흥국의 리스크 일부가 상쇄될 것으로 예상
- (정책권고) 백신 생산 및 배포의 가속화,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 개혁 등을 권고

- 백신 생산성을 향상시켜 전 세계에 신속하게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적 협력이 필요
-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
- 전반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거시경제 상황, 노동시장 등을 고려하여 피해계층에 집중된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함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구조개혁(자원의 재분배)이 필요



**[예산·결산 등]**

- OMB(관리예산처), FY2022 예산안 발표(2021. 5. 28)<sup>28)</sup>
  - (예산 기조)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주요 투자에 대한 재정 여력을 강조하는 한편, 장기적인 재정 압력에 대한 장기재정건전성의 필요 입장도 견지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 예산안 발표 전에 공개된 인프라 계획<sup>29)</sup>과 미국 가족계획<sup>30)</sup>을 바탕으로 국

28) OMB(관리예산처),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5/budget\\_fy22.pdf](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5/budget_fy22.pdf)  
 29) 인프라 계획은 3월 31일 발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4월호, 2021에 수록  
 30) 미국 가족계획은 4월 28일 발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2021에 수록



<표 3> FY2022 대통령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십억달러, %)

구분(CY <sup>1)</sup> )	2018	2019	2020	2021	2022	...	2031
	실적		전망				
GDP 명목규모	20,580	21,433	20,933	22,411	23,799	...	33,723
실질GDP 성장률	2.9	2.2	-3.5	5.2	4.3	...	2.0
CPI(Urban) <sup>2)</sup>	2.4	2.4	1.2	2.1	2.1	...	2.3
실업률	3.9	3.7	8.1	5.5	4.1	...	3.8

주: 1) CY = Calendar Year

2) 계절조정된 도시소비자 물가 지수

출처: OMB,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9), 2021. 5. 28.

가 인프라 재건과 함께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가족 관련 지원(아동 세액공제 확대 및 돌봄 관련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

- (경제전망) 전년도(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3.5%)을 기록하였으나, 올해(2021년) 성장률은 5.2%로 전망되고 있음
  - 올해(2021년) 실업률은 5.5%로 전년(8.1%) 대비 2.6%p 하락하였으며, 이후 2023년부터 나머지 전망 기간(~2031년)까지 3.8%를 유지할 전망
- (수입) FY2022 수입은 전년 추정치(3조 5810억달러) 대비 16.6%(5,930억달러) 증가한 4조 1,740억달러(GDP 대비 17.8%) 계획
- (지출) FY2022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약 17.1%(1조 2,380억달러) 감소한 6조 110억달러(GDP 대비 25.6%) 계획(순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3,050억달러)
  - (재량지출<sup>31)</sup>) FY2022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1조 5,225억달러 편성

- (의무지출<sup>32)</sup>) FY2022 의무지출(순이자지출 포함)은 전년 대비 22.1% 감소한 4조 3,230억달러 전망

- (국가채무) FY2022 연방정부 채무<sup>33)</sup>(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 추정치(24조 1,670억달러, GDP 대비 109.7%) 대비 8.7% 증가한 26조 2,650억달러(GDP 대비 111.8%) 전망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선임연구원>

### [기타]

####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1. 6. 2.)<sup>34)</sup>

※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에 발표

- (전반적인 경제활동) 4월 초에서 5월 하순까지 완만한 속도로 경제가 성장함

31) Table S-8. 2020 Discretionary Request by Major Agency (Base Discretionary Budget Authority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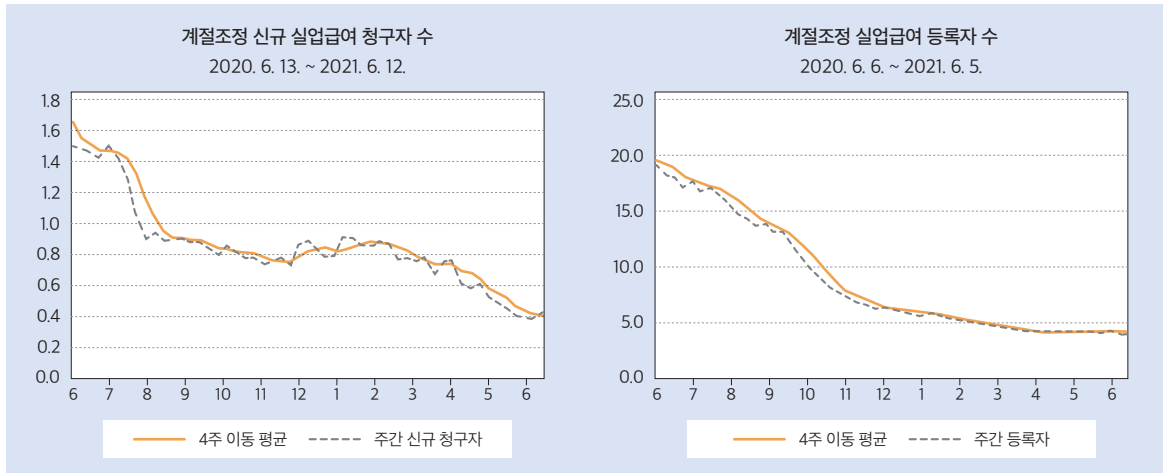
32) Table S-4. Proposed Budget by Category 기준

33) 정부 내부거래 제외

34) Fed, *Beige Book - June 2, 2021*, 2021. 6. 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106.htm>

[그림 1]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및 실업급여 등록자 수

(단위: 백만명)



출처: 미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Seasonally Adjusted Initial Claims, Seasonally Adjusted Insured Unemployment)," 2021. 6. 17.

- 백신접종 확대로 레저, 여행, 외식 소비 지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음
  - (고용 및 임금) 완만한 속도로 꾸준하게 고용 수준이 성장함
    - 코로나19의 확산이 느려지면서 식품 서비스,接客업 및 소매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했고, 제조업 또한 고용이 증가했음
    - 저임금·파트타임 노동자, 트럭 운전자 및 숙련된 기술자 공급이 부족했고, 일부 기업은 구직자 부족으로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하기도 했음
    - 임금은 완만하게 상승했고, 많은 기업이 근로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제공하고, 초봉을 인상했음
  - (물가) 지난 베이지북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함
    - 운송, 포장, 석유 화학 물가의 인상과 지속적인 공급망 중단 문제로 인해 비용 상승 압력이 강해졌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분야에서 비용 증가가 고객에게 전가되었음
- 미 노동부, 주간 실업급여 청구 통계 발표(2021. 6. 7.; 6. 10.; 6. 17.)<sup>35)</sup>

35) 미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2021. 6. 3.,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OPA/newsreleases/ui-claims/20210998.pdf>; 미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2021. 6. 10.,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OPA/newsreleases/ui-claims/20211041.pdf>; 미 노동부,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2021. 6. 17.,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OPA/newsreleases/ui-claims/20211108.pdf>



-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계절조정)는 5월 4주차(5월 23일~5월 29일) 38만 5천명(수정), 6월 1주차 37만 5천명으로 2020년 3월 1주차(25만 6천명)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6월 2주차에 41만 2천명으로 집계되어 3만 7천명 증가함
- 실업급여 등록자 수(계절조정)는 5월 3주차 377만 1천명으로 이전 주(360만 1천명)에 비해 16만 9천명 증가했고, 4주차 351만 7천명으로 크게 하락했으나, 6월 1주차 351만 8천명으로 증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선임연구원, 서동규 연구원>



일본

[기타]

- 내각부, 「경제 재정의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sup>36)</sup> 각의 결정(2021. 6. 18.)<sup>37), 38), 39)</sup>
  - (주요 내용) 그린, 디지털, 활력 있는 지방 만들기, 저출산 대책을 “일본의 미래를 개척하는 네 가지 원동력”으로 선정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모와 이에 따른 고용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달성을 통한 경제 재정 운영을 제안
  - (탄소 중립 실현) ‘세계의 탈탄소를 주도하고 경제

성장과 온난화 방지, 생태계 보호와의 양립을 도모한다’고 명기,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기 위해 ① 탈탄소를 주축으로 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 추진 ② 재생 에너지 주력화 ③ 공공부문의 선도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탈탄소화를 통해 연간 90조엔의 경제효과 및 850만명의 고용 창출을 실현한다는 목표 제시

- (디지털화) ‘관민 인프라를 향후 5년간 일기가성(一氣呵成)으로 구축한다’고 강조하고, 온라인화가 필요한 행정 절차의 대부분을 5년 이내 온라인화한다는 방침 제시
- (활력 있는 지방)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방에 대한 관심 증가, 재택근무 확대, 디지털화 등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지방의 인적 흐름을 창출하여 지방 소득을 끌어올려 일본 전체의 성장을 도모
- (저출산 대책) 결혼 지원, 불임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출산비용 실태를 고려한 출산육아일시금 증액 검토, 산후조리사업 추진, 지역에서의 육아 상호원조 추진 및 학대 및 빈곤 등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통해 어린이·육아 지원의 “질 향상”을 도모
- (근로자 지원) 일본의 최대 자원인 인재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 “휴먼 뉴딜”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연구와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인재를 육성

36)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21」 통칭 골태방침(骨太方針), 즉 국가의 골격을 정하는 방침으로 불림.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시작한 경제재정 기본 정책에 대한 총리 보고 문건으로 이후 매년 6월 역대 내각은 ‘골태방침’을 정하고 이를 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음

37)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99\\_suga/actions/202106/09keizaisheimon.html](https://www.kantei.go.jp/jp/99_suga/actions/202106/09keizaisheimon.html)

38) 내각부, <https://www5.cao.go.jp/keizai-shimon/index.html>

39) 내각부,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1/decision0618.html>

- 경제구조의 전환에 맞춰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근로자 재교육’을 강화, 희망자의 선택적 주 4일제 근무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능력 개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격차 해소) 소득수준 개선을 위해 ‘지역 간 격차에도 배려하며 보다 조기에 전국 평균 1천엔 달성을 목표로 2021년 최저임금 인상 추진’을 명기. 또한 올해 4월 중소기업에 적용이 확대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화를 지원
- (FY2022 예산 편성) 세출 기준이 지금까지 재정규율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을 토대로 성장력 강화에 힘쓰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sup>40)</sup> 지금까지와 같은 세출 개혁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하의 기준에 따른 예산을 편성<sup>41)</sup>
  - 사회보장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기반 강화기간(2019~2021년)에 그 실질 증가율이 고령화에 의한 증가분만큼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및 경제·물가 동향 등을 근거로 그 방침을 계속 유지
  - 일반세출 중 비사회보장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경제·물가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지금까지의 세출 개혁을 지속
  - 지방의 세출 수준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반세출 대응과 기초를 맞추면서, 교부단체를 비롯한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한 일반

재원의 총액에 대해 2021년도 지방재정계획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확보

<자료 정리 및 작성: 김정은 선임연구원>



독일

[기타]

- 독일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기간 9월 말까지 연장 발표(2021. 6. 7.)<sup>42)</sup>
  -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의 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기존: 6월 말)하기로 결정
    - 기존 프로그램(Überbrückungshilfe III)은 Überbrückungshilfe III Plus로 연계되며, 지원금액 상향 조정 등 새로워진 지원내용 발표
    - 향후 주정부의 폐쇄 명령에 따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최대 4천만유로까지 보상 청구 가능(기존 최대 지원인 1,200만유로 +4천만유로=5,200만유로까지 지원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3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운영재개 지원금(Restart-Prämie): 운영 재

40) 75세 이상 인구는 2021년도 0.5%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75세 진입에 따라 2022년도 4.1%, 2023년도 4.2%, 2024년도 3.9%로 높게 성장할 전망  
 41) 정말 필요한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혁에 의한 항구적 세입 증가를 확보할 경우, 세출 개혁 대응에 고려하는 등 "신 경제·재생 계획"에 따른 대응도 계속 추진  
 42) 독일 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6/2021-06-09-ueberbrueckungshilfe-bis-september-verlaengert.html>



개과정에서 직원의 고용시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기존 보조금과는 별도로 추가 보조금 지급

- 1인 자영업자 창업지원(Neustarthilfe für Soloselbstständige) 또한 9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지원자금은 매달 2021년 1~6월 1,250유로에서 2021년 7~9월 1,500유로로 확대(최대 1만 2천유로)

■ 독일 재무부, 코로나19 관련 문화·공연업계 지원 정책 발표(2021. 5. 26.)<sup>43)</sup>

-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문화행사의 재개 및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기금을 통한 지원 계획을 발표
  - 기금의 핵심요소는 ① 코로나19 관련 규정에 따라 관객이 감소한 소규모 행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② 대규모 문화 행사에 대한 취소 등에 대한 보호로 이루어짐

■ 독일 경제에너지부, 코로나19 관련 수출산업 지원 정책 기간 연장 발표(2021. 6. 18.)<sup>44)</sup>

-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독일 수출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5-Punkte Maßnahmenpaket<sup>45)</sup>) 지원 기간을 기존 2021년 6월 말에서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최근 몇 달 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수출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독일의 수출산업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원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주요 지원 내용으로 신생 수출기업 및 기존 기업의 자금조달 옵션 개선, 대출 만기 연장, 독일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 대출 행정 간소화, KfW(독일재건은행)의 기존 용자 프로그램 기간 연장 등이 있음

<자료 정리 및 작성: 김진아 선임연구원>



프랑스

[예산·결산 등]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FY2021 1차 수정예산 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1-1: PLFR 1) 발표(2021. 6. 2.)<sup>46)</sup>

- 2021년 1차 수정예산법안은 코로나19 위기 종식 때까지 기업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
- (경제전망) 2021년 1차 수정예산법안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월 발표한 2021~2027 안

43) 독일 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5/2021-05-26-sonderfonds-kulturveranstaltungen.html>

44) 연방 경제에너지부, "PRESSEMITTEILUNG, Außenwirtschaftsförderung," 2021. 6. 18.,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1/06/20210618-bundeswirtschaftsministerium-unterstuetzt-weiterhin-deutsche-exportwirtschaft-in-corona-pandemie.html>

45) 독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46) 프랑스 예산국, *PLFR 2021 -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2021*,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documents-budgetaires/exercice-2021/plfr-1-pour-2021\(https://www.budget.gouv.fr/files/uploads/extract/2021/PLFR1\\_2021/PLFR1\\_2021-VV.pdf\)](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documents-budgetaires/exercice-2021/plfr-1-pour-2021(https://www.budget.gouv.fr/files/uploads/extract/2021/PLFR1_2021/PLFR1_2021-VV.pdf))

정화 프로그램과 동일한 5%로 전망

- (재정전망) 2021년 1차 수정예산법안의 재정적자는 1,907억유로로 2021년 예산법에 비해 73억유로, 2020년 결산에 비해 126억유로 증가
- (재정수입) 2021년 예산법 대비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6억유로와 12억유로 증가하며 재정수입은 2,860억유로로 전망
- (지원 조치) 코로나 위기 종식까지 기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지원함
  -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시켜나갈 계획
  - 문화 관련 부문의 영업 재개에 따라 해당 부문에 총 1억 5천만유로 지원
  - 특별할당계정인 CAS PFE(Participations Financières de l'État)에 20억유로를 할당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자금 조달을 보장
  -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미션 지출에 98억유로 추가 편성
  -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미션 지출에 49억유로 추가 편성

### [기타]

-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2021년 1차 수정예산 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2021. 6. 2.)<sup>47)</sup>

- (경제전망) 2021년 성장 전망은 4월 발표한 안정화 프로그램의 전망과 동일하며, 이는 타당한 전망이라 평가
- (재정전망) 2020년의 재정지원은 일회성 조치에 해당하지만 2021년의 지원 조치는 일회성 조치로 간주되지 않아 구조적 수지에 포함되어, 2021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는 6.3%로 2020년 1.3% 보다 5%p 증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선임연구원>



## 영국

### [기타]

- 교육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캐치업(Catch-up) 자금 발표(2021. 6. 2.)<sup>48)</sup>
- (지원규모)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17억파운드 규모의 자금 외에 추가로 총 14억파운드의 자금 투자를 발표함
  - 취약 아동을 위한 600만명, 15시간의 무료 튜터링 과정 지원과 주요 과목 학습 지원을 위한 '16~19세 수업 지원 자금(16~19 tuition

47)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Avis N° HCFP-2021-3 relatif au premier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1," 2021. 6. 2.,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1-3-projet-de-loi-de-finances-rectificative-ndeg1>

48) Department for Education, "Huge expansion of tutoring in next step of education recovery," 2021. 6.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huge-expansion-of-tutoring-in-next-step-of-education-recovery>



fund)<sup>49)</sup> 확대 등에 10억파운드 배정

- 교사들에 대한 훈련 및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13학년<sup>50)</sup> 학생 중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 마지막 학년 유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4억파운드 배정

- (주요 평가) 일부 유급 기관들은 발표된 자금 규모가 학습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sup>51)</sup>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관광부 회복 지원을 위한 신규 계획 발표(2021. 6. 11.)<sup>52)</sup>

- (배경) 관광부문은 영국의 고용 및 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부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영국 경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산업 중 하나임

- 현재까지 정부는 관광, 레저,接客업 분야에 보조금, 대출, 조세 경감 등 약 250억파운드가 넘는 지원을 제공함

- (관광부문 회복 계획(The Tourism Recovery Plan))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관광부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 주요 목표

- 내국인 국내관광은 2022년까지, 외국인 국내관광은 2023년까지 2019년 수준을 회복
- 여행객이 더 오래 머무르게 하고 비수기 숙

박 점유율을 제고하며, 관광상품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을 높여 관광부문의 회복이 모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

- 기술과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관광 체험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고용을 증대하는 등 관광을 보다 생산적, 혁신적, 회복력 있게 개선

- 관광이 문화, 자연, 역사적 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 관광산업을 포용적이고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함

- 영국이 비즈니스 행사의 주요 개최지로서 팬데믹 이전의 위상을 회복

- (주요 방안) 단기적으로 관광부문의 안전한 재개, 기업 지원 제공, 관광 수요 촉진 등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제한이 해제되면 중장기적으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 중점을 두고 지원 예정

-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최소 1,900만파운드 할당, 관광 및接客 부문 VAT 인하, 적격 사업장에 대한 비주거용 재산세 경감 등

- 새롭게 국내 여행 철도 상품과 관광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예정

49)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중단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기타 16~19세 교육 제공기관에 자금을 지원함. 수업이 중단된 영어, 수학 등 과정의 소규모 그룹 수업료를 지원하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우선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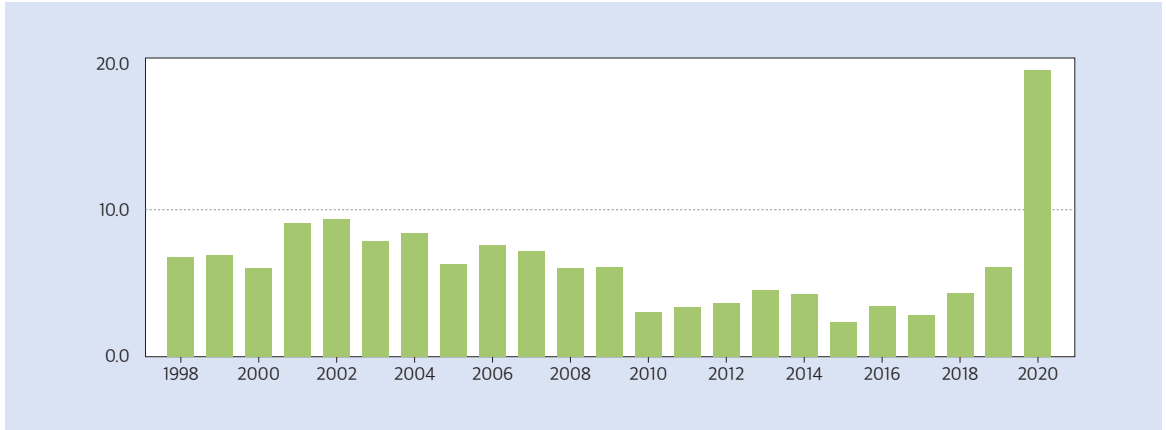
50) 영국은 11학년을 마치면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12~13학년의 교육이나 직업 교육(training)을 받음

51) The Guardian, "Pupils in England to be offered 100m hours of tuition in Covid catch-up plan," 2021. 6. 2.,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1/jun/02/pupils-to-be-offered-100m-hours-of-tuition-in-covid-catch-up-plan>

52)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New plan to drive rapid recovery of tourism sector," 2021. 6. 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plan-to-drive-rapid-recovery-of-tourism-sector>;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The Tourism Recovery Plan, 2021. 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92974/Tourism\\_Recovery\\_Plan\\_Web\\_Accessible\\_.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92974/Tourism_Recovery_Plan_Web_Accessible_.pdf)

[그림 2] 영국의 총경상의료지출 연간 증가율(경상가격 기준)

(단위: %)



출처: ONS, Healthcare expenditure, UK Health Accounts provisional estimates: 2020, 2021. 6. 1., Figure 1.

\*관광지 바우처 제도를 올해 가을에 도입해 여름 성수기 이후의 여행(2021년 9월~2022년 3월)을 장려할 계획(1천만파운드 규모로 국가 복권(National Lottery)에서 출시)이며 국내 휴가를 장려하기 위한 신규 레일패스는 올해 말 출시 예정

- 2022년에 예정된 행사<sup>53)</sup>들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 신규 지원은 물론 기존 관광 상품과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투자 등

■ 영국 통계청, ‘2020년 의료지출 통계(Healthcare expenditure, UK Health Accounts provisional estimates: 2020)’ 발표(2021. 6. 1.)<sup>54)</sup>

- (전체 의료지출) 2020년 영국의 전체 경상 의료지출은 약 2,69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20% 증가(명목 기준)하여 시계열 통계가 시

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빠르게 증가함([그림 2] 참조)

- 의료지출의 증가는 주로 정부 의료지출 증가(명목 기준 25% 증가)에 의해 주도됨
- 의료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2%에서 2020년 12.8%로 상승
- (정부 의료지출) 2020년 정부 의료지출은 약 2,200억파운드로 전체 의료지출의 82%를 차지하며,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이 나타남
- 정부 의료지출은 팬데믹으로 인한 직접 비용(진단 및 추적 등)과 기존 서비스 관련 간접 비용(일선 의료 종사자를 위한 추가 개인보호 장비 등)에 의해 증가

53) Her Majesty's Platinum Jubilee, Festival UK\* 2022, Commonwealth Games 등

54) ONS, "Healthcare expenditure, UK Health Accounts provisional estimates: 2020," 2021. 6. 1.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healthcaresystem/bulletins/healthcareexpenditureukhealthaccountsprovisionalestimates/2020>



- (비정부 의료지출) 2020년 비정부 의료지출은 약 49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약 2% 증가함
- 비정부 의료지출 변화는 자금 조달방식에 따라 다르며 팬데믹으로 인해 가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였으나 의료재화에 대한 지출은 증가함

<자료 정리 및 작성: 한혜란 선임연구원>

- 비민영기업의 경우 농림·수산·목축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IT, 행정·사회보장·공공기관 부문의 경우 임금 상승률이 10%를 초과하여 높은 상승률을 기록
  - 이러한 상승은 2020년 농수산품의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과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사업과 방역사업이 활성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또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민영기업의 운송·저장·물류업, 숙박·외식업, 문화·스포츠·오락 부문의 평균임금 상승률이 작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 [기타]

#### ■ 국가통계국, 2020년 평균임금 통계 발표(2021. 5. 20.)<sup>55)</sup>

- 2020년 민영기업(私营单位) 도시근로자 연간 평균임금은 5만 7,727위안으로 2019년 대비 4,123위안 증가하여 7.7%의 상승률 기록(실질 상승률은 5.3%)
- 2020년 비민영기업(非私营单位)<sup>56)</sup> 도시근로자 연간 평균임금은 9만 7,379위안으로 2019년 대비 6,878위안 증가하여 7.6%의 상승률 기록(실질 상승률은 5.2%)
-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부지역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동북지역
- 평균임금 상승률은 산업부문별로 상이하며 민영기업과 비민영기업이 다른 양상을 보임

<표 4> 2020년 중국 지역별 평균임금

(단위: 위안, %)

구분	민영기업		비민영기업	
	평균임금	증감률	평균임금	증감률
동부지역	63,601	6.9	112,372	8.0
중부지역	48,861	11.2	78,193	6.4
서부지역	50,510	8.0	88,000	7.4
동북지역	43,928	10.2	77,631	8.2
전국	57,727	7.7	97,379	7.6

주: 증감률은 2019년 대비 연간 평균임금 증감률을 나타내는 값  
 출처: 국가통계국, 『2020年城镇非私营单位就业人员年平均工资』表 1;  
 『2020年城镇私营单位就业人员年平均工资』表 1

55)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sjgd/202105/t20210519\\_1817670.html](http://www.stats.gov.cn/tjsj/sjgd/202105/t20210519_1817670.html), 최종 검색일자: 2021. 6. 20.

56) 비민간기업은 국영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 등 법인을 포함함

<표 5> 2020년 중국 산업부문별 평균임금

(단위: 위안, %)

구분	민영기업		비민영기업	
	평균임금	증감률	평균임금	증감률
농림·수산·목축업	38,956	3.2	48,540	23.4
광산업	54,563	9.8	96,674	6.2
제조업	57,910	9.6	82,783	5.9
전력·난방·수도 공급	54,268	9.3	116,728	8.3
건축업	57,309	5.8	69,986	6.7
도·소매업	53,018	8.8	96,521	8.4
운송·저장·물류업	57,313	6.1	100,642	3.7
숙박·외식업	42,258	-0.4	48,833	-3.0
정보통신·소프트웨어·IT	101,281	18.7	177,544	10.0
금융	82,930	9.0	133,390	1.5
부동산	55,759	2.5	83,807	4.6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58,155	1.6	92,924	5.4
과학기술 연구 및 서비스	72,233	6.8	139,851	4.8
수리(水利)·환경·공공시설 서비스	43,287	-2.6	63,914	4.5
주거 서비스	44,536	1.4	60,722	0.8
교육	48,443	-4.6	106,474	9.0
보건 및 사회 서비스	60,689	6.2	115,449	6.0
문화·스포츠·오락	51,300	4.1	112,081	4.1
행정·사회보장·공공기관	-	-	104,487	10.7
전국	57,727	7.7	97,379	7.6

주: 증감률은 2019년 대비 연간 평균임금 증감률을 나타내는 값

출처: 국가통계국, 『2020年城镇非私营单位就业人员年平均工资』, 表 2; 『2020年城镇非私营单位就业人员年平均工资』, 表 2

■ 국가통계국, 제7차 인구조사 결과 발표(2021. 5. 11)<sup>57)</sup>

-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 1,178만명으로 제6차 인구조사가 실시된 2010년(13억 3,972만명) 대비 5.38%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 이번 조사에서 인구조사가 진행된 이래 처음으로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을 넘어섰으며 노동가능인구는 지난 조사 대비 감소

- 출산율은 1.3명이며 2016년 전면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시행한 이후 신생아 중 두 번째 자녀의 비중은 4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자료 정리 및 작성: 이재원 연구원>

57)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zxfb/202105/t20210510\\_1817176.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2105/t20210510_1817176.html), 최종 검색일자: 2021. 6. 16.

# 재정포럼

2021년 7월호 통권 제301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성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 월간 재정포럼

2021년 7월 15일 발행 / 제25권 제7호(통권 제30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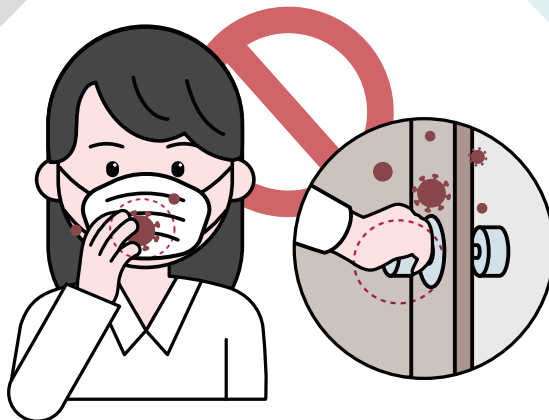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2020. 05. 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